


# 법인세 부담 연구

##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2004. 12

박기백 ·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 서 언

시장이 점점 더 글로벌화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외국자본의 유치 및 국내자본의 축적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법인과 관련된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 또는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행해진 법인세 부담에 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국민계정자료와 국세통계자료 등의 거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다수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 대비 세수를 사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계산하는 경우에 손실기업과 이익을 낸 기업이 합산됨으로써 세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손실의 이연 등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할 수가 없다. 이밖에 산업이나 업종별로 법인세 부담의 차이가 있지만 거시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감안할 수 없다. 따라서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시자료에 비하여 제한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입수 가능한 미시자료인,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측정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세청 세무자료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융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의 개별 기업에 대한 자료는 입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법인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세의 평균적인 세부

담, 즉 평균실효세율을 측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법인세 부담을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각종 조세부담 지표의 개념과 장단점 소개로부터, 미시자료를 이용한 세부담 측정을 통한 세부담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기업수지 또는 기업의 세부담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에까지 합리적인 이론과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측정함으로써 정부의 각종 정책설계의 큰 방향을 잡는 데에 기초연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그간 연구에서 공백이었던 미시자료를 이용한 경제학적 법인세 부담 분석분야에 일조가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재정연구실의 박 기백·김 진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고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의 개선점과 세부적인 미비점을 지적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정리에 함께 수고한 이정미 주임연구원, 윤창용 연구원, 원고정리 및 교정을 맡아준 변경숙, 홍유남 연구조원,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4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 요 약

최근 글로벌화와 조세경쟁이 일반화되면서, 법인과 관련된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또는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명목세율, 조세부담률, 실효세율(평균,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우리나라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외국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법인의 소득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세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큰 원인은 세무조정이나 손실공제 이연 기간, 각종 조세감면 등이 외국법인에 비해 불리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정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시자료를 사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할 때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자료 외에 개별 법인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의 평균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였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세청 자료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융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자료는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포함되는 범위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이며 사용연도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조업 등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 즉 경제적 이익의 기준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세액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법인세 등에 대한 자료와 1999년부터 사용된 법인세 비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세액에는 법인세 이외에 주민세 등도 포함된다.

전체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업별 평균세율(세금/소득)에 외형 구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조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91년의 약 22% 수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지속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약간 증가하여 2003년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1년의 약 17% 수준에서 1995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약 18%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조세부담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기업의 평균세율의 중간값 및 평균자료를 사용하였고, 비중 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기업은 제외된 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계산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중간값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기업 모두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약 2%p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 1996년까지는 3%p 또는 그 이상이었으며, 이후 2000년에 6%p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5%p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율 격차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의 영향도 있지만 이중 세율구조로 인하여 대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 실효세율의 계산의 경우 산업별 비중 조정은 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자료를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5~28%의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내의 업종간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중반에는 10%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그 차이가 감소

하여 약 4~6%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G7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점별로 5~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는 대만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평균유효세율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7 국가의 경우에, 영업이익 기준하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평균유효법인세율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으로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하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감가상각과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감가상각비가 다소 하락한 반면 인건비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지와는 달리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가 1990년대 초반 -2.2%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출액 대비 -0.7%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상장기업의 영업외수지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이자비용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의 하락은 약 2% 수준으로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을 보면 1997년 이전까지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영업이익 대비 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자산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 등은 세부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세율의 분석결과에서는 세부담이 기업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세법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변동성을 줄이려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술개발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모두 OLS와 Fixed Effects 모형에서 유효세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억 미만 더미에 대한 계수는 강한 음수로 나타나고 있어 세율이 높아 세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많이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조정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목 차

I. 서 론 .....	17
II. 법인세 현황 .....	20
1. 법인세제 .....	20
가. 현행 법인세제 .....	20
나. 법인세제의 변화 .....	24
다. 법인 관련 감면제도 .....	30
2. 법인세 세수 .....	37
III. 세부담 측정 방법 .....	42
1.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	42
2. 평균실효세율 .....	43
가. 개 념 .....	43
나. 측정 방법 .....	45
3. 한계실효세율 .....	50
가. 개 념 .....	50
나. 측정방법 .....	51
4. 기타 측정방법 .....	54
가. 명목세율 .....	54
나. 조세부담률 .....	55
IV. 세부담 측정 - 거시자료 .....	58
1. 조세부담률 .....	58
2. 국세통계 자료 .....	60

3. 국민계정 자료 .....	62
4. 외국과의 비교 .....	63
V. 세부담 측정 - 미시자료 .....	67
1. 측정방법 .....	67
가. 대상 및 방법 설명 .....	67
나. 미시자료와 거시자료의 차이 .....	69
2. 자 료 .....	70
가. 자료 설명 .....	70
나. 자료의 조정 .....	73
3. 평균실효세율 - 납부액 기준 .....	77
가. 전체 기업 .....	77
나. 기업규모 기준 .....	80
다. 산업 기준 .....	84
라. 제조업종 기준 .....	86
마. 소득규모별 .....	87
4. 평균실효세율 - 이연법인세 기준 .....	90
가. 전체 기업 .....	90
나. 기업규모별 .....	92
5. 평균실효세율 - 5년 평균 .....	94
가. 전체 기업 .....	94
나. 기업규모별 .....	95
6. 외국과의 비교 .....	97
가. 자 료 .....	97
나. 분석 결과 .....	98
7. 기업수지 변화 요인 .....	105
가. 영업 수지 .....	105
나. 영업외수지 .....	107

VI.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	111
1. 평균실효세율 .....	111
가. 자료 및 분석 방법 .....	111
나. 분석 결과 .....	112
2. 세부담 조정 .....	114
가. 분석 방법 .....	114
나. 분석 결과 .....	116
VII. 요약 및 시사점 .....	119
참고문헌 .....	124
<부록 1> 업태, 외형 기준 법인 비중 .....	132
<부록 2> 영업이익 기준 소득별 법인세율 .....	133
<부록 3> 전체기업(금융업포함)의 법인세율 평균값 추이 .....	135
<부록 4> 법인세율 5년 평균의 중간값 추이 .....	137
<부록 5> 납부액 기준 법인세율의 기업 규모별 추이 (평균값 기준) .....	139
<부록 6> 산업별, 업종별 법인세 부담 추이 .....	141

## 표 목 차

<표 II-1>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	20
<표 II-2> 법인세율의 변화 .....	26
<표 II-3>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의 변화 .....	27
<표 II-4> 법인 관련 조세감면 .....	29
<표 II-5> 투자지원제도 현황 .....	31
<표 II-6>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34
<표 II-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36
<표 III-1>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	56
<표 IV-1> GDP 대비 법인의 세부담 .....	59
<표 IV-2> 총소득과 세액의 추이 및 비율(법인세 신고 기준) .....	61
<표 IV-3> 주요국의 법인세 및 법인잉여의 비교 .....	65
<표 V-1> 연도별 업종별 자료의 분포 .....	72
<표 V-2> 규모별, 기업공개별 자료의 분포 .....	73
<표 V-3> 외형 기준 법인 비중 .....	75
<표 V-4> 업태별 법인 비중 .....	76
<표 V-5> 국가별 조사 대상 표본의 수(2003년 기준) .....	98
<표 V-6>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100
<표 V-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101
<표 VI-1> 영업이익 대비 유효법인세율 .....	112
<표 VI-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법인세율 .....	113
<표 VI-3> 기업합리화적립금 .....	118
<표 VI-4> 기술개발준비금 .....	118

## 그 립 목 차

[그림 II-1] 법인세 산출 과정 .....	23
[그림 II-2] 법인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	38
[그림 II-3] 조세 및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	39
[그림 II-4] 법인세 및 GDP 증가율 비교 .....	40
[그림 II-5] 법인세 원천분 세수의 비중 추이 .....	41
[그림 II-6] 원천징수 부과세액 및 평균 세율 .....	41
[그림 IV-1] 과세자료로 본 기업의 법인세 부담 .....	61
[그림 IV-2] 실효세율(영업이익 기준)과 GDP 대비 법인소득 비중 .....	62
[그림 IV-3] 주요국별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 .....	64
[그림 IV-4] 주요국별 GDP 대비 영업이익 비중 .....	66
[그림 V-1]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평균값) ..	78
[그림 V-2] 미시·거시자료 기준 법인의 조세부담 비교 (평균값) .....	78
[그림 V-3]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중간값) .....	79
[그림 V-4]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중간값, 기업규모별) .....	81
[그림 V-5]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 (중간값, 기업규모별) .....	81
[그림 V-6]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부담 격차(중간값) .....	82
[그림 V-7] 법인세율의 분포(영업이익 대비, 2003년 기준) .....	83
[그림 V-8] 법인세율의 분포(순이익 대비, 2003년 기준) .....	83
[그림 V-9] 산업별 법인세율(순이익, 중간값 기준) .....	84
[그림 V-10] 산업별 법인세율(영업이익, 중간값 기준) .....	85
[그림 V-11]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중간값 기준) .....	85
[그림 V-12] 순이익 대비 세부담(중간값 기준) .....	86

[그림 V-13] 화학제품제조업과 전자부품의 세부담 격차 (중간값 기준) .....	87
[그림 V-14] 소득별 기업규모의 분포(순이익 기준) .....	88
[그림 V-15] 소득별 법인세율(전체-순이익, 중간값) .....	89
[그림 V-16] 소득별 법인세율(대기업-순이익, 중간값) .....	89
[그림 V-17] 소득별 법인세율(중소기업-순이익, 중간값) .....	90
[그림 V-18] 이연법인세율 추이-전체(평균값) .....	91
[그림 V-19] 이연법인세율 추이-전체(중간값) .....	92
[그림 V-20]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중간값, 기업규모별) .....	93
[그림 V-21]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중간값, 기업규모별) .....	93
[그림 V-22] 법인세율 추이 - 전체(5년 평균) .....	95
[그림 V-23]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중간값, 5년평균, 기업규모별) .....	96
[그림 V-24]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 (중간값, 5년평균, 기업규모별) .....	96
[그림 V-25] G7 국가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103
[그림 V-26] G7 국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103
[그림 V-27] 동아시아 국가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104
[그림 V-28] 동아시아 국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	104
[그림 V-29] 매출액 대비 영업수지(중간값 기준) .....	105
[그림 V-30] 감가상각비(중간값 기준) .....	106
[그림 V-31] 인건비(중간값 기준) .....	107
[그림 V-32]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중간값) .....	108
[그림 V-33] 이자비용(중간값 기준) .....	109
[그림 V-34] 매출액 대비 법인세 .....	110

## I. 서론

기업은 순소득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형태로 지불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법인세는 기업의 순수익 규모, 기업의 현금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는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의 세부담은 중요하다. 시장이 점점 더 글로벌화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개별 기업은 이러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이 낮은 국가로 사업의 근거지를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조세경쟁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는 고용, 부가가치, 조세수입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외국의 투자자본이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국은 외국자본의 유치 및 국내 자본의 축적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법인과 관련된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또는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세부담을 측정,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가 개발·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지표로 명목세율, 조세부담률, 실효세율(평균·한계)이 있다. 그러나 완벽한 지표는 없으므로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사용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GDP 대비 징수세액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소득 대비 조세부담의 지표로는 적절하다. 그러나 세율 등 조세정책의 변화가 아닌 GDP의 등락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조세부담률의 변화를 기준으로 조세정책의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세부담을 계산할 때 거시자료가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다수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operating profits) 대비 세수를 사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계산하는 경우에 손실기업과 이익을 낸 기업이 합산됨으로써 세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손실의 이연 등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할 수가 없다. 이밖에 산업이나 업종별로 법인의 세부담 차이가 있지만 거시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감안할 수 없다. 즉,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제한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거시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시자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반면 지금까지 법인의 세부담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거시자료를 이용한 방식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회계학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법인의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의 평균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고자 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세청 세무자료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융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는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법인세 현황이다. 여기서는 법인의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법인세제와 법인세 세수의 추세를 살펴본다. 세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제III장에서 한다. 평균실효세율, 한계실효세율, 명목세율, 조세부담률 등 각종 조세부담 지표의 개념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측정방법을 소개한다. 제IV장에서는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측정한다. GDP, 법인의 영업잉여 등 국민계정자료와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측정한다. 본 연구의 핵심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세부담 측정은 제V장에서 다룬다. 법인세 납부액, 법인세 비용, 5년 평균 법인세 납부액의 세 가지 변수로 세부담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본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기업의 수지에 대한 변화요인 분석도 제V장에서 시도한다. 제VI장에서는 기업의 특성이 평균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파악한다. 또한 법인이 각종 조세감면이나 준비금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변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는지도 실증 분석한다. 마지막 장은 요약과 결론이다.

## II. 법인세 현황

### 1. 법인세제

#### 가. 현행 법인세제

법인세의 징수대상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영리, 비영리)이다. 2002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현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이다. 다음 <표 II-1>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법인의 형태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은 차이가 있다. 영리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지만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으로 인한 발생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외국법인의 경우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표 II-1>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sup>1)</sup>
내국 법인	영리법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열거된 수익사업 발생소득 납세의무 없음	비과세 납세의무 없음	과세 납세의무 없음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발생소득	비과세	과세

주: 1) 가급등지역 토지 등은 2002년부터 과세(현재 지정지역 없어 시행 유보), 주택은 2004년부터 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4. 9.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만 다를 뿐 같은 소득과 세이므로 법인세의 세금계산 방식은 소득세의 계산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즉,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소득세에 비해 특별히 복잡한 부분은 소득의 계산이다. 개념상으로 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입 및 비용과 관련한 다수의 조정이 있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법인세법 제14 조①).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하며, 기업회계상 수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상 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손금항목이 기업회계상의 수익 및 비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 기업회계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대해 익금항목과 손금항목을 가감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확정 결산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동 항목들은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으로는 준비금·감가

상각비·충당금·대손금 등이 있다. 신고조정은 기업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 사항 중 특정 항목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도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신고조정항목으로는 퇴직보험료 등·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 불산입 등의 단순신고조정 항목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sup>1)</sup>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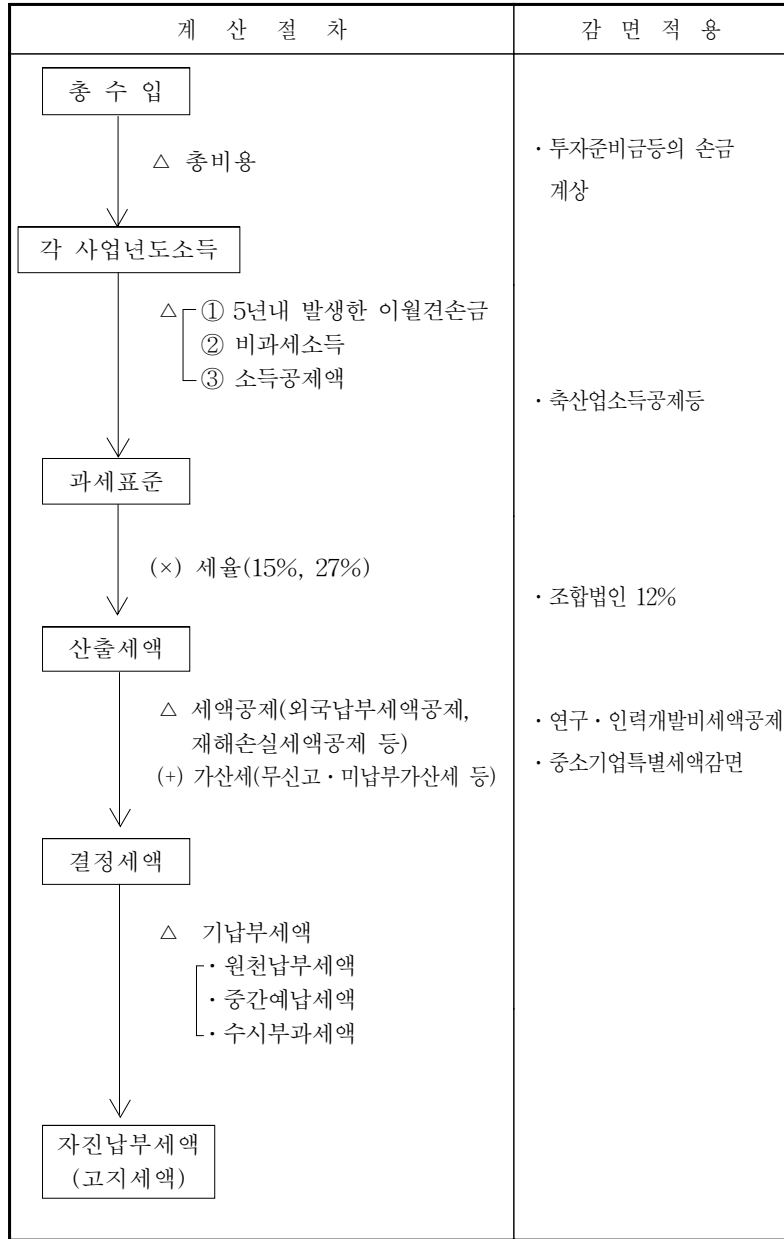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5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 대해 앞서 살펴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15%, 1억원 초과분은 2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sup>2)</sup>.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을 추가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된다(세액의 변화를 야기하는 각종 감면은 ‘법인 관련 감면제도’에서 다룬다).

세금의 납부를 살펴보면 그 방식에 따라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과세, 정산납부로 구분된다. 중간예납은 내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전체 법인세에서 감면된 법인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또는 가결산을 통해 산출한 납부세액 중 선택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는 법인에

1)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인이 준비금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에 산입할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 2005 사업연도부터 13%,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합법인의 경우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주택 30%('05사업연도부터 40%),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10%('05사업연도부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림 II-1] 법인세 산출 과정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4. 9.

이자 및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과 동일하다. 수시과세는 법인세 포탈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정해진 기일 이전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징수된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확정신고 및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므로 신고분 징수세액은 전년도 법인소득이 주로 결정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의 종결이 가능하다. 한편 이자소득 100%와 수익사업소득의 50% 한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동 준비금을 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된다.

#### 나. 법인세제의 변화

법인세 과세대상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1974년의 세제개편에 의해 도입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특별부가세제도를 들 수 있다. 특별부가세는 원래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양도소득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으며,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세목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지가 안정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의 투기가 축소되고, 법인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

정에 부동산의 매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부가세의 존재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측면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정부도 2002년 세제개편에서 특별부가세를 폐지<sup>3)</sup>하였다.

다음으로 세율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표 II-2> 참조). 세율이 변한 경우도 있고, 구간이 조정된 경우도 있으며, 법인구분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법인세율은 일반법인(비공개)·공개법인·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개법인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세법상의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1982년 세법 개정으로 비공개와 공개법인간의 구분을 두지 않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상의 구분도 영리법인·비영리법인·공공법인으로 법인의 공개 여부보다 법인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공공법인에 대한 우대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1990년도 세법 개정이며 이때부터 법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를 두지 않기 시작했다. 따라서 법인은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으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되었다. 1997년에는 공공법인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여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법인세 세율구조를 단순화시켰다. 그러나 공공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한편 다른 조세감면을 할 수 없었으므로 세수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세율의 경우 1971년에는 공개법인의 경우 10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16%, 20%, 27%의 3단계였으나 1974년에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20%, 27%의 2단계로 축소하였다. 1980년에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25%, 33%를 적용하였다. 해당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여 1982년에는 20%, 27%가 되었다. 1988년에는 세율을 나누는 기

3) 2001. 12. 31자로 법인세법 제99조 특별부가세 조항 삭제

&lt;표 11-2&gt; 법인세율의 변화

	일반(중소)법인	공개(상장)법인	비영리(학교)법인
1971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100만원 이하 16% 1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35%
1974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1975	동일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0(15)% 500만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원 초과 20(25)% 500만원 초과 27(33)%	동일
1978	300만원 이하 20(15)% 300만원 초과 30(25)% 500만원 초과 40(35)%	500만원 초과 20(25)% 500만원 초과 27(35)%	동일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 (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이상 30(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상 30(33)%	8천만원 초과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이상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상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이상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이상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0%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2001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 27%		
2005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통계자료집』, 1997. 및 보도자료.

<표 II-3>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의 변화

연 도	대 상	금액 계산
1960년	국무원령 규정 소득금액	영업세 과표×소득율 ×법인세율
1961년 8월	영업과세표준	100분의 1
	지급 소득금액	영업과세과표준×소득율 ×법인세율
1961년 12월	일반 사채, 지불준비금, 신탁이익 등 사익이나 사식의 배당 등 비영업대금의 이자	100분의 12
		100분의 12
		100분의 15
법정	영업세과세표준 금액 지급	100분의 1
지정	영업세과세표준 * 소득율	법인세율
1965년	일반 사채, 지불준비금, 신탁이익 등 사익이나 사식의 배당 등 비영업대금의 이자 부동산소득금액	100분의 12
		100분의 12
100분의 10		
100분의 1		
지정	영업세과세표준	100분의 1
1967년	일반 사채, 지불준비금, 신탁이익 사익이나 사식의 배당 등 비영업대금의 이자 부동산소득금액 기타소득(신설)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1
		100분의 15
1968년	일반 비영업대금의 이자 기타소득(폐지)	100분의 20 -
1971년	일반 예적금, 어음, 신탁이자 등 사채 이자 비영리자금의 이자 기타소득(신설)	100분의 5
		100분의 20
		100분의 20
		100분의 20
1974	일반 이자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 세율
	법정 물품 판매, 인도 물품대금, 용역대가 지급	100분의 1
	특별 공연료, 물품인도, 법인의 부동산 임대료 지급	100분의 1

&lt;표 II-3&gt;의 계속

연 도	대 상	금 액 계 산
1976	일반	일반 원천징수 제외 모두 폐지
1980	일반	이자, 배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 축소 - (국민투자채권, 재정증권, 양곡기금증권, 기타 금융채권, 기타 채권 이자 과세) 분리과세 세율을 5%에서 10%(예금이자)
1982	일반	국공채 이자 등 비과세를 10% 분리과세
1989	일반	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금액 과세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이자 과세
1990	일반	원천징수 세율 인상 20% 가명거래에 대한 세율인상
1992	일반	특정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20%로 인하
1993	일반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 과세
1994	일반	원천징수 세율을 분리, 종합과세분 모두 15%로 인하 법인수취 기타소득 원천징수 면제
1998년 10월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22%로 인상(98년 10월부터)
1999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로 인하
2000년 12월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15%로 인하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통계자료집』, 1997 및 보도자료.

준이 8천만원으로 높아졌다. 1990년도부터는 해당 기준이 1억원이 되었으며 낮은 세율은 20%, 높은 세율은 34%였다. 그리고 해당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는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은 27%가 적용되고 있으며 2005 사업연도부터는 현재 세율에서 각각 2%p 인하한 13%, 25%가 적용된다. 다만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표 II-4> 법인 관련 조세감면

구 분	지 원 내 용	해당 조문
투자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li> <li>○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li> <li>○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li> <li>○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li> <li>○ 임시투자세액공제</li> <li>○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li> <li>○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li> <li>○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투자세액공제</li> <li>○ 투자세액 이월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특 24조</li> <li>조특 25조</li> <li>조특 25조의2</li> <li>조특 28조 ①</li> <li>조특 26조</li> <li>조특 11조 ①</li> <li>조특 25조</li> <li>조특 94조</li> <li>조특 144조</li> </ul>
재무구조개선 및 사업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li> <li>○ 신설법인등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li> <li>○ 현물출자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재산 취득·등록세 면제</li> <li>-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li> </ul> </li> <li>○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특 7조의2</li> <li>조특 47조</li> <li>조특 38조</li> <li>조특 32조</li> </ul>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본사 수도권지역 외 지역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특별세액 감면(과밀억제권역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li> <li>- 감가상각자산 취득, 특별부가세 50%감면</li> <li>- 양도차익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과세</li> </ul> </li> <li>○ 농공단지입주기업 법인세 50% 감면</li> <li>○ 제주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li> <li>-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특 63</li> <li>조특 64</li> <li>조특 121의8 ①</li> <li>조특 121의9 ②</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법인세 50% 감면</li> <li>○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li> <li>○ 고용중대 특별세액공제</li> <li>○ 해외과건비에 대한 일시세액공제</li> <li>○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특 30조의2</li> <li>조특 30조의3</li> <li>조특 30조의4</li> <li>조특 10조의2</li> <li>조특 12조 ②</li> </ul>

원천징수의 징수 대상 및 세율의 변화는 <표 II-3>과 같다. 가장 큰 변화는 1976년에 지정 및 법정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현재 이자 및 배당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행해지고 있다.

## 다. 법인 관련 감면제도

각종 조세감면도 법인의 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도 큰 상태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1) 법인 일반

일반적인 법인과 관련이 있는 조세지원은 그 성격에 따라 투자 관련, 사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이전 관련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생산성 향상 설비, 에너지 절약 설비, 특정 설비, 연구인력개발 설비 등 모든 사업자의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과 투자 대상을 구별하지 않지만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다수 존재하는데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및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과 같은 특례조항과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그것이다. 이외에 법인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과 농공단지 및 제주도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 입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이나, 고용중대 및 해외과견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주어진다.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II-5>와 같다. 우선 생산성 향상 설비의 대상으로는 제조업 공정개

<표 II-5> 투자지원제도 현황

구 분	방 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산성 향상 설비	세액공제	· 모든 사업자 * 제조업 공정개선·자동화시설,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ERP 설비, 전자상거래 설비	· 투자액의 5% 세액공제
환경 안전 설비 투자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2006.12.31까지 투자분 *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 투자액의 3%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 모든 사업자 * 에너지 절약시설 * 중유의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의 생산시설 * 중수도시설·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적용시기별 투자액의 7%~15% 세액공제
사회간접 자본	준비금	· 사회간접자본 건설 법인 * 도로, 항만, 공항, 전원설비 * 초고속정보통신시설 * 수자원 개발, 수도 및 하수종말처리	· 투자액의 5% 손금 산입
임시 투자	세액공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사업용자산	· 투자액의 15% 세액공제
연구 인력 개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2006.12.31까지 투자분	· 평균 발생액 40% 초과분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2006.12.31까지 투자분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 자산	· 투자액의 7% 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2006.12.31까지 투자분 * 사원용임대주택,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 설비취득가액 7% 세액공제

주: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제외

선·자동화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등이 있으며 시설 고도화가 그 대상이다. 환경안전 설비의 경우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사업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sup>4)</sup>. 이외에 에너지 절약 시설 및 중유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 생산시설, 중수도시설과 절수기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광업 및 제조업을 비롯하여 다수 업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제조업 및 광업의 시설투자만이 대상이었고 국산 및 외국산의 차별이 있었으나 이후 내·외산의 차별이 없어지고 대기업의 노후시설 대체투자에서 모든 사업용자산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업종도 비제조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가장 규모가 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면, 당해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 지출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기업은 초과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7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7%가 세액 공제된다(다만 수도권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

4) 구 조특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투자대상 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6년말로 연장하고, 투자설비 내역을 변경하여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개정함.

가 일반적인 한도이다(기술집약·자본재·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우에는 5%). 이밖에 기술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술 취득과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도 있다.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기술 이전의 경우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5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및 직장내 보육시설 등과 같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이외 사회간접자본 건설법인의 특정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인 사회간접자본 준비금제도가 존재한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으로는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이연받은 금액의 재과세이연이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에 대한 조세지원을 들 수 있다. 한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2)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경제 개방화에 따른 국민경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자본재도입시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이 가능한 감면대상 사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 외국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종전 수출자유지역 공장시설 설치,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lt;표 II-6&gt;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구 분	지원 내용	해당 조문
외국인 투자기업	· 소득세·법인세 감면 ·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중 토세 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자본제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조특 121의2 ② 조특 121의2 ④,⑤ 조특 121의2 조특 121의3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특 121의2 ③
고도기술도입	기술제공대가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조특 121의6
공공차관의 대주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공과금 면제	공차법 8⑥
공공차관과 관련한 외국인 기술·용역 제공자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공차법 8②

### 3) 중소기업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숫자가 많고, 고용·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창업, 자금조달, 사업경영 안정,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방이전, 투자 등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창업지원의 경우를 보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업·물류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이 중요한 벤처기업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투자자, 투자조합 등 자금 제공자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등이 비과세되고 있다. 또한 투자회사가 투·융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부가통신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의 발생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대비의 손비인정의 경우 대기업의 1,200만원보다 더 높은 1,8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재무구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다수 존재한다. 제조업·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을 폐지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광업 등의 분야에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합병장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다. 제조업·건설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신규 취득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공해 방지, 근로복지 증진, 환경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비 및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고, 보다 원활한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감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중소기업에 주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의 4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당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15%세액 공제 중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lt;표 11-7&gt;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구 분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벤처기업</li> <li>* 창업중소기업</li> <li>* 창투자 관련 조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50% 감면</li> <li>- 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li> <li>- 행사이익 연간 3000만원 한도 비과세</li> <li>- 투자금액 15% 소득공제</li> <li>-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벤처기업 지원(시설취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증토세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경영안정</li> <li>*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li> <li>* 대손충당금, 퇴직 급여충당금</li> <li>* 접대비 기준금액</li> <li>* 결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과 업종에 따라 10(5)~15% 감면</li> <li>-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손금산입</li> <li>- 중소기업의 한도가 높음</li> <li>- 결손금 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li> <li>*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li> <li>* 중소기업간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손금산입</li> <li>- 양도차익 과세이연</li> <li>- 등록세·취득세·농특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 과세이연</li> <li>- 등록세·취득세·증권거래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투자</li> <li>* 투자준비금</li> <li>* 투자세액공제</li> <li>*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li> <li>* 특정 설비</li> <li>* 에너지 절약시설</li> <li>* 임시투자세액공제</li> <li>* 근로자 복지증진시설</li> <li>* 정보화지원사업</li> <li>* 환경안전설비 투자</li> <li>* 감가상각비 손금산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가액의 20% 손금산입</li> <li>-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li> <li>-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li> <li>- 투자금액의 3%</li> <li>- 투자금액의 7%</li> <li>- 일반법인의 경우와 동일</li> <li>- 투자금액의 7%</li> <li>- 설비투자지원금의 손금산입</li> <li>- 투자금액의 3%</li> <li>- 2004년6월까지의 고정자산취득분 감가상각비 손비계상 불문 손금산입</li> </ul>

<표 11-7>의 계속

구 분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인력개발</li> <li>* 연구·인력개발준비금</li> <li>*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li> <li>* 설비투자 세액공제</li> <li>* 기술이전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집약적 5%, 기타 3% 손금산입</li> <li>-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 50%, 비용의 15% 선택</li> <li>- 투자금액의 7%</li> <li>- 50% 세금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li> <li>*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li> <li>* 법인본사 수도권 이외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이외 지역</li> </ul> </li> <li>* 농공단지 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금 불산입, 취득·등록세 면제</li> <li>3년간 소득·법인세 100%, 5년간 50% 등</li> <li>- 익금 불산입</li> <li>취득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li> <li>- 법인세 50%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li> <li>* 어음제도 개선</li> <li>* 최저한세 우대</li> <li>* 세액공제의 이월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금액의 0.3% 세액공제</li> <li>- 최저한세 10% 적용</li> <li>- 공제받지 못한 세금 이월하여 공제</li> </ul>

연구개발과 관련된 설비투자 및 준비금에 대한 조세지원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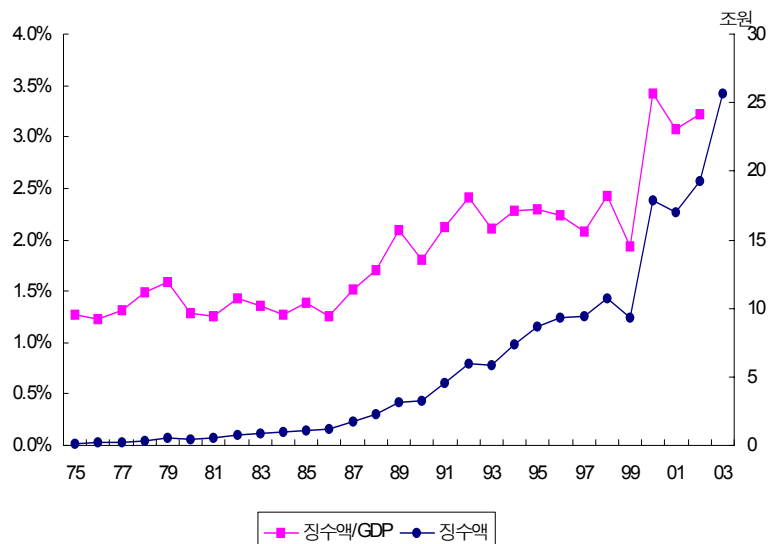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권 내의 공장 및 법인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밖에 최저한세가 대기업은 15%인 반면 중소기업은 10%로 낮으며, 감면받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 2. 법인세 세수

법인세에 대한 추정에 앞서 법인세 자료를 살펴보자. 먼저 징수액 추이를 보면 1975년 약 1,300억원에서 2003년에는 약 26조원으로

로 200배 정도 증가하였다. 법인세 징수액을 GDP에 대비하여 보면 1985년에는 GDP의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GDP<sup>5)</sup>의 3%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와 외환위기 이후에 법인세 세수 비중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림 II-2] 법인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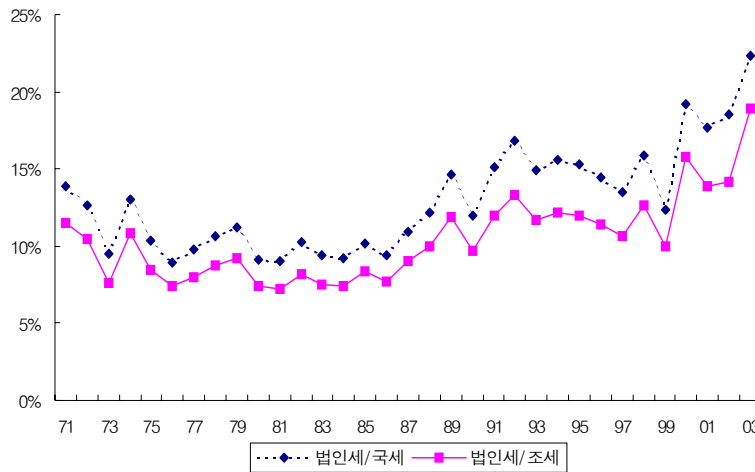


전체 조세수입 또는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1971년에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이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1981년에는 10% 이하로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17~19%를 차지하다가 2003년에 더욱 증가하여 약 22%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980년

5) 시계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보고서에서 사용한 GDP는 변경되기 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치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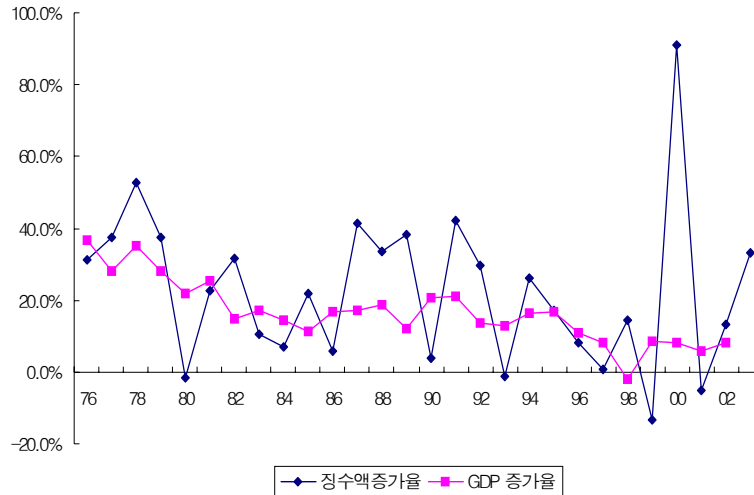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법인세의 세입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또 다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외부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3] 조세 및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그리고 법인세 세수의 증가율과 GDP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GDP에 비해 법인세의 등락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세수는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기가 악화되면 GDP 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법인세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며, 법인의 세부담을 측정할 때 경기적인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4] 법인세 및 GDP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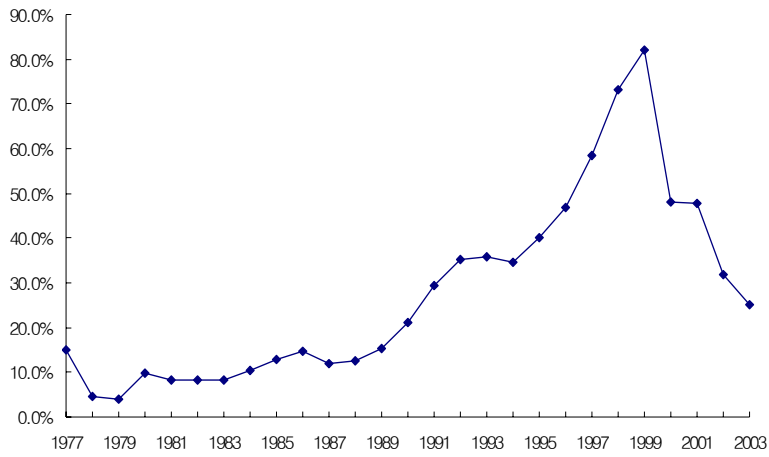


다음으로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자. [그림 II-5]를 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법인세 정수액 중 원천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원천징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도에는 원천분의 세수 비중이 약 50%로 신고분과 거의 비슷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원천분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신고분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원천분의 비중이 낮아져 신고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지고, 시장이자율도 낮아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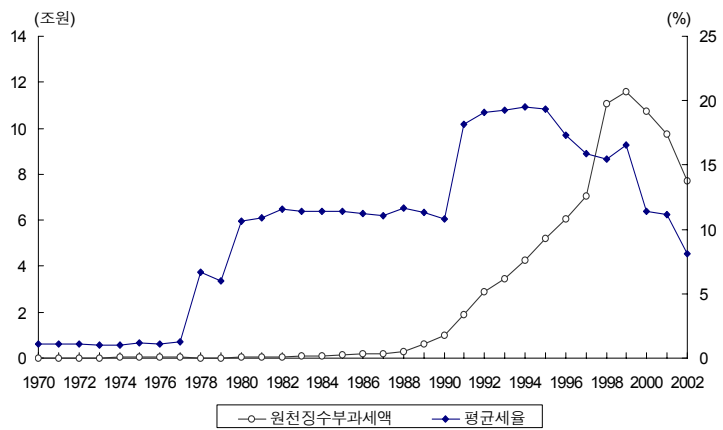
원천징수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원천징수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대비 부과세액, 즉 평균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 1977년까지 1% 수준이었으나 1978~1979년도에는 약 5%, 1980년도 이후부터는 약 10%, 1991년 이후는 20%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로는 평균 세율이 낮아져, 2002년에는 8% 수준으로 나타나 있

다. 2000년의 경우 평균세율이 11%로 낮아졌지만 부과세액의 수준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나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II-6] 참조).

[그림 II-5] 법인세 원천분 세수의 비중 추이



[그림 II-6] 원천징수 부과세액 및 평균 세율



### Ⅲ. 세부담 측정 방법

#### 1.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실제 조세부담과 명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명목세율과 다른 소위 실효세율 또는 실효세율의 정의, 측정, 그리고 영향 등을 계속해서 연구하였다. 법인이익 또는 법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의 비율, 즉 실효법인세율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이 있다<sup>6)</sup>.

평균개념은 기존 자본스톡까지 포함한 기업행위로부터의 총소득에 대해 부과된 총세금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관측 자료로부터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계개념은 한계투자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세부담 비율로 정의되는데 가상 투자로부터의 한계실효세율을 계산한다.

실효세율에 대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연구된다. 또한 케인즈(Keynes)를 비롯한 거시-화폐 이론의 중심에 있는 화폐금융정책의 중립성과 연계되어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거시자료를 이용한 한계실효세율 분석이 주로 행해졌다.

1930년대에 피셔(Fisher)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기된 화폐의 중립성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를 추적된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 Feldstein(1982)을 비롯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다. 즉, 만약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1970년대에도 만연하였던 인플레이션은 기업

---

6) 보통 평균실효세율을 실효세율, 한계실효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부른다.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화폐환상이 없이 실질이자율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Feldstein(1982)에서는 조르겐슨(Jorgen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행해진 거시경제학적 조세이론모형을 계량경제학적 기법으로 검증하였다. 1953년부터 197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기업투자를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평균실효세율의 분석이 활발하였다. 이즈음 제기된 조세개혁 논란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는 과연 기업의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조세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세무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 정보로서의 재무제표자료가 사용되었다. 1986년에 이루어진 미국의 조세개혁법을 전후로 한 논쟁은 미시적 자료를 사용한 분석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알기 위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대별하여 실효세율의 개념 및 측정방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 2. 평균실효세율

### 가. 개념

개념상으로 보면 평균세율은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가계의 경우 소득은 소비와 부(wealth)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이 된다. 그리고 법인의 소득은 장부상 소득(수익)이 아닌 경제적 소득 (economic income)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제적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세법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의 계산과 경제적 감가상각이 다르기 때문

이다. 그리고 세무자료에 나타난 과세표준이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비과세 및 감면 등 정부정책에 따른 소득 조정이 발생하므로 법인의 소득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납세자료보다 재무자료가 더 우월하다.

또한 세액도 장부상 세액이 아닌 법인세 발생액으로 하여야 세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손금 이월 등 경기 변동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물레이션을 하거나 몇개 연도를 평균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감가상각, 부채 가치 등 물가 변화에 따른 조정도 필요하다.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효 세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손법인은 제외하고 세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법인의 경우 궁극적으로 소득이 개인에게 분배되므로 법인세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재산세 및 배당, 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합한 경우의 두 가지가 가능하다.

Omer, Molloy, and Ziebart(1990)에서는 Fullerton(1984)의 (평균)실효세율에 대한 정의, 즉 기업의 전년도 소득 중의 전년도 조세 비중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평균실효세율을 측정하는 것이 분자인 조세액과 분모인 소득액의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평균실효세율 방법을 사용하면 명목세율이나 조세부담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명목세율과 비교할 경우 평균실효세율의 장점은 실제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조세부담률과 비교하면 GDP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평균실효세율의 이점이 있다. 즉, 각종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므로 세부담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세율은 적절히 측정된다면 전체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된다. 부담하는 세액에 명목세율, 소득 및 세액공제가 암묵적으로 감안되므로 실제적인 세

부담과 가까운 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과 법인간, 자본과 노동간 세부담의 분포와 추이를 보여주는데 여타 지표보다 유용하다<sup>7)</sup>.

#### 나. 측정 방법

##### 1) 거시자료

Fullerton(1983, 1984)에서는 평균실효세율을 평균실효법인세율과 평균실효합계세율로 구분하고 있다. 법인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것이 평균실효법인세율이고, 법인세액뿐만 아니라 이외에 법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도 고려한 것이 평균실효합계세율이다.

거시자료를 사용할 경우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실효세율은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를 법인부문의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로 나눈 값이다.<sup>8)</sup> 즉, 법인부문의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잉여를 사용한 것이다. 기업의 영업잉여에서 가계부분에 지급된 이자비용, 임대, 로열티 등을 제외한 값을 법인의 소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전자는 평균실효합계세율에 후자는 평균실효법인세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Feldstein and Summers(1979)는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미국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분모로는 납세 전에 주주와 채권자에게 귀속가능한 총실질소득을 사용하였다. 즉, 세원으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지불가능한 총세전법인소득을 사용한

7) 직접 지불되는 명시적 조세(explicit taxes)만을 다루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세혜택을 받는 투자에 대해 발생하는 세전수익률의 감소를 내재적 조세(implicit)로 여기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균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느끼는 세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8) Project Analysis 평균세율이라는 개념도 미래 투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가상 프로젝트를 기초로 세전, 세후 수익의 차이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다음 세전 수익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것이다. 분자로는 그 소득에 법인, 주주, 그리고 채권자에 의해 지불되는 총세금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모두 다섯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1) 법인소득세 (2) 배당세 (3) 자본이득세 (4) 인플레이션에 의한 추가자산 과세분 (5) 명목이자지급에 해당하는 과세분 등이다.

Feldstein, Dicks-Mireaux, and Poterba(1983)은 Feldstein and Summers(1979)를 확장한 것으로 총세부담과 (비금융기관의) 실제 자본소득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을 포함시켰다.

OECD의 경우 Volkerink and de Haan(1999)는 Mendoza, Razin and Tesar(1994)에서 제기된 평균실효세율의 측정치 개념에 따라 'OECD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평균실효세율을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에너지세 등에 따라 계산하였다. 법인소득세의 평균실효세율의 계산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 2) 미시자료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소득의 대리변수로는 세전장부소득(Pretax Book Income)이 사용된다. 그러나 과세표준 또는 과세대상소득(Income Subject to Tax)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세전장부소득과 다르다. 먼저, 수익이 있는 법인만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최소값 0을 갖는다. 그리고, 순영업손실(NOL, the net operating loss)에 대해서는 몇 년에 걸쳐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각종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가 존재한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1) 세전장부소득 또는 법인세차감전이익을 이용한 접근법 (2) 영업현금흐름(operating cash flow)을 이용한 접근법 (3)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이용한 접근법 등 세 가지가 있다.

세전장부소득을 이용한 접근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하

### III. 세부담 측정 방법 47

원에서 나온 Joint Committee on Tax(1984)를 출발점으로 들 수 있다. JCT에서는 분자로 연방과 외국에 낸 세금(current federal and foreign tax expense)을 사용하였다. 분모로는 세전장부소득(pretax book income)에서 지분법적용회사투자이익(equity income from unconsolidated subsidiaries)과 몇 개의 특별이익(income from extraordinary and discontinued operations)을 차감하고 외부주주지분이익(income from minority interests)을 가산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Porcano(1986)는 분자에는 현년도 연방법인세(current federal tax expense)를, 분모에는 세전장부소득(pretax book income)에서 지분법적용회사투자이익(equity income from unconsolidated subsidiaries)을 제하고 외부주주지분이익(income from minority interests)을 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세전장부소득은 연방법인세전순이익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지불하는 소득세를 포함하며 Joint Committee on Tax(1984)에서와 달리 특별수지를 포함한다. 물론 6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정된 NIBT, 즉 수정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Porcano(1986)는 1982년에 1,348개, 1983년에 869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상당히 낮고 기업의 규모에 대해 역진적(regressive)임을 주장했다. 기업의 규모는 자본지출, 세전순이익, 총자산, 총판매 등 4가지를 사용하였는데 각각 4분류를 하여 평균실효세율을 구한 후 비교분석하였다. 산업별 분석은 표준산업분류의 4자리 분류 코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음(-)의 법인세부담을 갖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명목세율보다 큰 법인세부담을 갖는 산업도 보고되었다. 평균실효세율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조세구조별 분석을 행함으로써 1986년 조세개혁의 기술적인 기초자료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Gupta and Newberry(1997)에서는 평균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분자로 현년도 법인세 비용(current income tax expense)

을, 분모로는 이자 및 조세 이전 장부소득(book income before interest and taxes)을 사용하였다. 1986년의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연구는 평균실효세율이 기업규모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평균 실효세율이 기업의 자본구조, 자산조합, 그리고 성과와 연계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주로 기업규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던 TRA86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던진 것이다<sup>9)</sup>.

영업현금흐름(operating cash flow)을 이용한 접근법의 대표적인 연구는 Zimmerman(1983)인데 분자에는 총세액(total tax expense)에서 이연법인세 및 투자세액감면의 변화(change in deferred tax liability and ITC)를 차감한 것을, 분모에는 영업현금흐름을 사용하였다. 즉, 분자로는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세의 변화를 차감한 것을, 분모로는 매출액에서 판매비용을 차감한 것을 사용하였다. 1947~1981년의 35년간에 걸친 43,515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upta and Newberry(1997)에서도 영업현금흐름을 이용하여 평균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분자로는 현년도 법인세 비용(current income tax expense)을, 분모로는 법인세·금융비용 이전 영업현금흐름(operating cash flow before interest and taxes)을 사용하였다.

9) Gupta and Newberry(1997)는 한편으로 1982~1985년간 823개, 1987~1990년간 915개의 기업들의 비연속 자료를, 다른 한편으로 655개 기업들의 연속 자료를 바탕으로 OLS 추정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평균 실효세율을, 설명변수들은 기업규모(size),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세 가지의 자산조합(asset mix), 기업성과 (firm performance) 등을 사용하였다. 기업규모로는 전체자산의 장부가격을 사용하였다. 자본구조로는 전체자산 대비 장기부채 비율을 사용하였다. 자산조합 중 자본집중도로는 전체자산 대비 순채산, 공장, 장비의 비율을, 재고집중도로는 전체자산 대비 재고비율을, 연구개발집중도로는 순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각각 사용하였다. 기업성과로는 자산수익률(returns on assets), 즉 전체자산 대비 세전수입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이용한 접근법으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기업의 세무자료를 이용한 부류가 있고,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한 부류가 있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두 연구는 과세소득을 추정된 부류에 속한 반면 2000년대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두 연구는 기업의 세무자료를 직접 활용한 부류에 속한다.

Stickney and McGee(1982)는 과세소득을 이용한 연구인데 분자에는 총세액(total tax expense)에서 이연법인세(deferred tax expense)를 차감한 것을, 분모에는 세전장부소득(pretax book income)에서 이연법인세(deferred tax expense)와 법정한계세율(statutory marginal tax rate)의 비율을 차감한 것을 사용하였다.

Shevlin(1987)은 분자에는 총세액(total tax expense)에서 이연법인세의 변화(change in deferred tax liability)를 차감한 것을, 분모에는 세전장부소득(pretax book income)에서 이연법인세의 변화(change in deferred tax liability)와 법정한계세율(statutory marginal tax rate)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Plesko(2003)와 Gordon and Lee(2001)에서는 미국 국세청에서 입수한 Statistics of Income's (SOI) corporation file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84,213개의 기업으로부터의 조세보고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세무자료를 이용한 평균실효세율의 계산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증가는 그 주된 분석방향을 평균실효세율에서 한계실효세율로 바꾼다. 실제로 Plesko(2003)의 주된 연구는 한계실효세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시자료를 이용한 평균실효세율 연구는 박한순(2000)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회계학적 계산이 대부분이었다. 전주성(2004)은 평균실효세율의 측정치를 제시하고 그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을 행하였다. 평균 실효세율은 법인이 부담한 세금을 법인의 세전 소득, 즉 경제적 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분자로는 법인세를, 분모로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총자산 등 네 가지를 사용하였다. 기업의 세부담이 (1)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2) 재무구조와 같은 기업특성에도 영향을 받음을 적시한 전주성(2004)은 (1)과 (2)의 전체 효과만이 아니라 각각의 효과도 분석하여 경제적 해석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과 (2)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영업이익 기준 세율을, 부가적으로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였다. (1)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세율을, (2)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구변수로 총자산 기준 세율을 사용하였다. 전주성(2004)은 1993~2002년의 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본기간중 기업 세부담 변동과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부채비율, 수출비율, 감가상각자산비율을 보고하였다. 이는 재무구조, 수출보조금, 감가상각공제 등이 기업의 세부담을 설명하는 변수로 유력함을 의미한다.

### 3. 한계실효세율

#### 가. 개념

한계실효세율은 세전 및 세후 수익의 격차를 측정한다. 한계실효세율은 과거 물가상승률, 투자 형태(건물, 기계, 재고), 채용조달 방식(유보소득, 주식 발행, 부채)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R_g - R_n) / R_g$ 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R_g$ 는 한계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세전실질수익률(감가상각 차감)을 나타내고,  $R_n$ 은 채원으로 사용된 저축의 소득세 세후실질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계실효세율은 수익률에 대한 조세의 효과를 측정하므로 투자에 대한 유인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용된 가정의 안정성, 자료의 한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시장하에서 대표적 기업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독점기업이 존재한다. 또한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를 가정하지만 모든 분야, 국가, 시점에 한계생산성 체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지적자본의 한계생산성 체증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시장균형조건(arbitrage condition)도 모든 분야, 국가, 시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자료의 제약이 적지않다. 예를 들어, 기업 및 주주 수준에서의 모수(parameter)를 얻기 어렵고, 경제적 감가상각률,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정확히 알기가 곤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 나. 측정방법

##### 1) 거시자료

투자가 세후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에 이루어진다는 대전제하에 조세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Jorgen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행해진 투자방정식의 추정 - Hall and Jorgenson (1967), Summers(1981) - 과 사회후생 손실의 측정을 주로 행한 Harberger(1966) 등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simulation기법으로 대변할 수 있다.

Fullerton(1983)에서는 실효세율과 유효한계수익률차(effective tax wedge)를 구분하였는데 한계수익률차는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실효세율도 세포함 실효세율과 세제외 실효세율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의 한계 실효세율을 고안하였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한계수익률차 = 기대 실질세전수익률 - 실질세후수익률

$$\text{유효한계법인세율} = \frac{\text{유효한계수익률차}}{\text{세전수익률 또는 세전수익률}}$$

총유효한계수익률차 = 기대 실질세전수익률 - 투자자금공급자의 세후수익률

$$\text{총유효한계법인세율} = \frac{\text{총유효한계수익률차}}{\text{세전수익률 또는 투자자금공급자의 세후수익률}}$$

King and Fullerton(1984)에서는 유효한계세율 또는 유효한계수익률이 사용되었는데 한계투자자에 대한 세후실질수익률과 세전수익률을 계산하여 구하였다. 이러한 총유효한계세율은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약점을 갖는다.

Jorgenson and Sullivan(1981)에서는 유효한계법인세율이 사용되었는데 법인세 내에서의 각종 유인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을 포착하는 데에 유용하다. 또한 법인부문내의 산업간 혹은 자산간 투자배분 등의 분석에 유용하다.

곽태원(1985)은 Jorgenson and Sullivan(1981)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을 변형시켜 산업별 자산별 유효한계법인세율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율이나 정책변수의 변화가 산업별·자산별 유효한계법인세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그후 거시 자료를 이용한 일련의 연구가 계속되었다. 윤건영(1988), 김준영(1991), 윤종인(2000) 등을 대표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최근 한계실효세율을 거시 경제 및 조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국내문헌으로는 김진수, 박형수, 안중석(2003)을 들 수 있는데 한계실효세율의 정의를 '가상적 투자를 가정하고 그 투자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에다 명목세율, 감가상각제도, 투자 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적용하여 예

상되는 세부담'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계실효세율은 투자가 1단위 증가함에 따른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요긴한 개념이다. 김진수, 박형수, 안종석(2003)에서는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유발되는 한계실효세율을 계산하였는데, 국제인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p 인하하면 지방세인 주민세의 법인세할도 줄어들어 총세율의 인하폭은 2.2%p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한 일반기업이 납부하는 한계실효세부담도 1.9~2.2%p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미시자료

Scholes and Wolfson(1992)는 기업이 현 조세기간중 추가적인 과세소득 1달러를 얻음으로써 조세당국에게 지불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한계실효세율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법인세제가 갖는 비대칭성과 다기간성에 기인하는데 비대칭성은 수익법인과 적자법인의 차별화를, 다기간성은 결손금을 과거나 미래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제의 이러한 특성은 경영자가 과거나 미래의 기업의 조세상태(tax status)를 잘 반영한 세율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즉, 과거연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 이월금이나 미래연도에 발생할 예정인 순영업손실의 선납금을 고려하고 시간할인율인 이자율의 변화를 반영한 한계실효세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투자 및 재무행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한다.

Shackelford and Shevlin(2001)은 회계학에서의 실증적 조세연구를 Scholes and Wolfson(1992)에 기준하여 정리하면서 그 중 주요 부문으로 한계실효세율의 측정을 들었다. 순영업수입(수익)이 있는 기업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분석을 할 때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비영업손실의 이월을 통한 미래조세의 회복을

반영하는 등 현실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Manzon(1994) 등은 미래 과세소득의 추정을 위해 비영업손실의 이월이 끝나는 평균시기를 계측하였다. Shevlin(1987, 1990)과 Graham(1996)은 기업의 과거의 과세소득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과세소득을 계측하는 데 좀더 정교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현년도 세율을 효과적으로 계측하는 데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조세상태에 대한 이분법적 대체변수(proxy)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계실효세율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국내 문헌으로는 노현섭, 서갑수, 서종길(2004)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기업의 한계세율에 대한 기존연구로 Shevlin(1990), Manzon(1994), Graham(1996), 이준규(1997), 고종권(1997)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들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정리하고 있다.

#### 4. 기타 측정방법

##### 가. 명목세율

세부담을 논의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는 명목세율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정해진 세율이다. 소득과세의 경우 명목세율은 중앙정부의 세율과 ‘합산세율’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합산세율이란 소득에 대한 모든 세율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산세율에는 소득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가적으로 부가하는 세금과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 포함된다<sup>10)</sup>.

10) 소득세의 경우에는 합산세율에 일부 유럽국가에서 부과하는 교회세가 추가되기도 한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험료가 합산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료와 사회보장 급여와의 연계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최고 한계세율을 기준으로 명목세율을 비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회보장보험료는 합산 최고세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에 한도가 존재하므로 한계세율이 0이

명목세율은 법률에 규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산의 번거로움이 없고, 국제간 비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명목세율은 소득공제나 비용산입 등 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세감면의 경우 그로 인한 조세감면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세부담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명목세율과 세부담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각종 비과세, 감면(자가 임대소득, 이자 공제, 감가상각, 투자세액감면 등)으로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소득이 100억원이고, 명목세율이 30%, 비과세 및 감면이 40억원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과세표준은 60억원이고, 납부하는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18억원이 되므로 실효세율은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인 18%가 된다. 즉, 명목세율은 30%이지만 실효세율은 18%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과소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나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납세액으로 정의된다. 조세부담률은 보통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비중을 의미하지만 개별 세목의 GDP 대비 비중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사회보장비가 포함되는 국민부담률과 그렇지 않은 조세부담률의 경우로 구별되기도 한다. 조세부담률은 총량적인 세부담 지표로서 자주 활용된다. 민간의 세부담은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부문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정부부문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세부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적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조세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세

---

되기 때문이다.

부담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 경우 조세부담률은 ① 법인세/세전 법인소득과 ② 세전 법인소득/GDP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세율, 과세기반의 조정 등 세제의 변화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지만 2단계에서는 GDP에서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즉 경제의 부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세정책이나 조세행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GDP 대비 법인소득의 비율이 낮아지면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의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각각 2.5%, 5%라고 하자. 그러나 A국과 B국의 세전 법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와 20%라면 법인의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 즉 실효세율은 A국과 B국 모두 25%로 동일하다.

<표 III-1>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단위: %)

	A 국	B 국
조세부담률	2.5	5
법인소득/GDP	10	20
실효세율	25	25

또한 GDP에는 법인의 손실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흑자법인만 부담하므로 흑자법인의 세부담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즉, 적자법인의 세부담은 세율과 관계없이 0이며 흑자법인은 조세부담률 지표보다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이 존재한다. 그리고 조세지출의 존재, 연금에 대한 과세 등도 조세부담률로 국가간 조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보다 조세감면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게 된다. 연금급여를 낮게 하는 대신 연금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 Ⅲ. 세부담 측정 방법 57

연금급여가 높고 연금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의 조세부담률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고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이다.

## IV. 세부담 측정 - 거시자료

### 1. 조세부담률

먼저 총량적인 세부담 지표로서 자주 활용되는 조세부담률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납세액으로 정의된다. 대상은 국세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세율, 과세기반의 조정 등 세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GDP에서 법인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법인의 수익이 손실과 상계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세를 포함한 OECD 국가의 법인의 조세부담률을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990년대에 법인의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국가들이 있다. 1990년과 2000년을 비교하여 보면 핀란드는 2.1%에서 5.6%로, 노르웨이는 3.8%에서 5.9%, 스웨덴은 1.6%에서 3.9%로 증가하였다.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조세부담률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3.7%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1.9%로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도 1970년에는 5.3%로 매우 높았지만 2002년에는 3.2%로 낮아졌다. 독일은 1970년대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최근에는 더욱 낮아져 1%를 하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 법인의 GDP 대비 세부담이 2.0% 수준이었

&lt;표 IV-1&gt; GDP 대비 법인의 세부담

(단위: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호주	3.8	3.3	4.1	4.4	6.5	4.5	-
오스트리아	1.5	1.4	1.4	1.5	2.0	3.1	2.3
벨기에	2.4	2.2	2.4	3.0	3.6	3.6	3.5
캐나다	3.5	3.6	2.5	2.9	4.0	3.5	2.9
체코	-	-	-	4.9	3.8	4.2	4.7
덴마크	1.0	1.4	1.5	2.0	2.4	3.1	2.8
핀란드	1.7	1.4	2.1	1.8	5.6	4.9	4.1
프랑스	2.1	2.1	2.3	2.1	3.1	3.4	2.9
독일	1.7	1.9	1.6	1.1	1.8	0.6	0.7
그리스	0.4	0.9	1.6	2.1	4.4	3.4	3.1
헝가리	-	-	-	1.9	2.2	2.4	2.3
아이슬란드	0.6	0.7	0.9	1.0	1.9	1.2	0.9
아일랜드	2.5	1.4	1.7	2.8	3.8	3.6	3.8
이탈리아	1.7	2.4	3.9	3.6	3.2	3.6	3.0
일본	5.3	5.5	6.5	4.2	3.6	3.5	3.2
한국	-	2.0	2.7	2.5	3.7	3.3	3.6
룩셈부르크	5.2	6.6	6.5	7.5	7.2	7.5	8.6
네덜란드	2.4	2.9	3.2	3.1	4.2	4.1	3.5
뉴질랜드	4.7	2.5	2.4	4.4	4.0	3.8	4.2
노르웨이	1.1	5.7	3.7	3.8	5.9	9.4	7.8
폴란드	-	-	-	3.0	2.6	2.0	2.1
포르투갈	-	-	2.3	2.6	4.2	3.6	-
슬로바키아	-	-	-	-	2.9	2.2	2.8
스페인	1.3	1.2	2.9	1.8	3.0	2.8	3.2
스웨덴	1.7	1.1	1.6	2.8	3.9	2.9	2.8
스위스	1.7	1.7	2.1	1.9	2.8	3.1	3.1
터키	0.8	0.7	1.3	1.5	2.3	2.4	2.2
영국	3.2	2.9	4.1	3.3	3.6	3.5	2.9
미국	3.7	2.9	2.1	2.6	2.5	1.9	-
OECD 평균	2.3	2.4	2.7	2.9	3.6	3.5	3.4

주: 국세 및 지방세 포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4

으나 1990년에는 2.7%, 2000년에는 3.7%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2장에서 국세 중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추이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에 대한 조세부담이 외국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는 없다.

## 2. 국세통계 자료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의 세부담을 계산해 보자. 법인의 소득은 경제적 소득이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사업연도소득과 과세표준을 사용한다. 다만 사업연도 소득 대비 법인의 세부담에는 주민세나 사업소세 등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법인세 납세자료에 따르면 사업연도소득 및 과세표준 기준으로 최근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사업연도소득 기준을 보면 1998년까지 20%를 상회하던 것이 최근 약 19%대로 하락하고 있다. 과세표준 기준 역시 25%를 상회하던 수준에서 1997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3%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왔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IV. 세부담 측정 - 거시자료 61

<표 IV-2> 총소득과 세액의 추이 및 비율(법인세 신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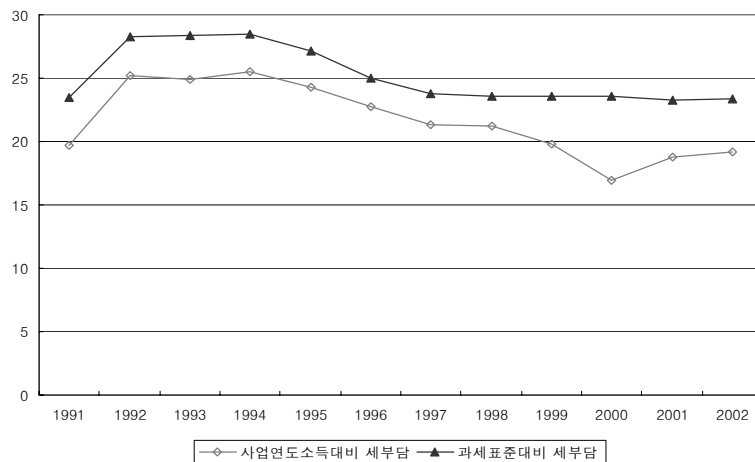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

구 분	사업연도소득①	과세표준②	세액③	비율1(③/①)	비율2(③/②)
1990	15,033	12,781	2,907	19.3	22.7
1991	17,259	14,445	3,397	19.7	23.5
1992	20,007	17,851	5,049	25.2	28.3
1993	21,095	18,441	5,245	24.9	28.4
1994	24,999	22,352	6,376	25.5	28.5
1995	31,338	28,056	7,603	24.3	27.1
1996	33,041	30,065	7,524	22.8	25.0
1997	33,317	29,888	7,101	21.3	23.8
1998	32,969	29,529	6,981	21.2	23.6
1999	38,777	32,659	7,693	19.8	23.6
2000	85,781	61,585	14,538	16.9	23.6
2001	79,313	64,191	14,929	18.8	23.3
2002	89,640	73,558	17,235	19.2	23.4

주: 비율1은 사업연도소득대비 세부담이고, 비율2는 과세표준대비 세부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1] 과세자료로 본 기업의 법인세 부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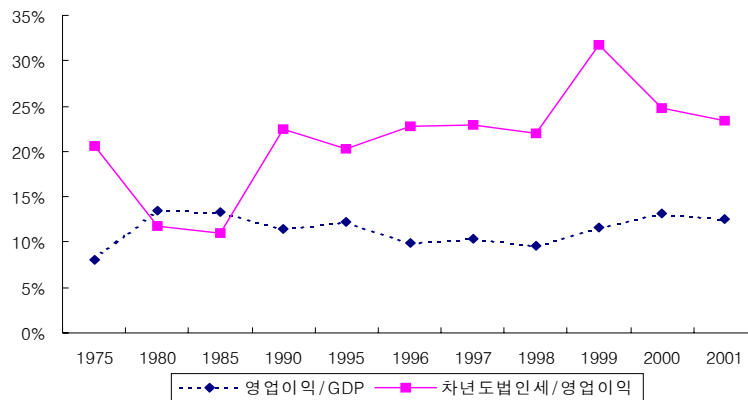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3. 국민계정 자료

법인의 경제적 소득의 대리변수로 법인의 영업잉여를 사용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측정해 보자. 법인의 경제적 소득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에 있는 법인의 영업잉여를 사용하였다. 또한 세액은 차년도의 법인세 세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법인세 징수의 주대상이 전년도 영업실적이므로 영업이익과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다만 이 경우 원천징수, 중간납부, 정산 등의 관련 연도 및 이월결손금 등으로 법인세 징수액이 사업연도의 소득(영업잉여)과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자료의 결과를 보면 법인소득 대비 조세부담, 즉 실효세율은 최근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999년을 제외하면 1995년 이후 실효세율 증가 여부는 불분명하다. 1999년이 예외적으로 높은 이유는 외환위기의 와중에 있었던 1998년도의 대규모 결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 실효세율(영업잉여 기준)과 GDP 대비 법인소득 비중



- 주: 1. 지방세 자료가 불분명하여 법인세 자료만을 사용.  
 2. 영업이익 자료는 신계열 자료만이 제공되므로 2002년 수치는 시계열의 불일치가 존재해 사용하지 못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4. 외국과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영업잉여와 영업잉여/GDP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 주요 국가와 비교를 시도해보자<sup>11)</sup>.

먼저 법인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GDP 대비 영업잉여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후로 그 비중이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15%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1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법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거의 25%에 다다른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독일도 1990년대 초반에는 1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최근에는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캐나다는 법인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법인의 영업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는 20%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흔히 논의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법인의 비중이 높아 법인세 세수가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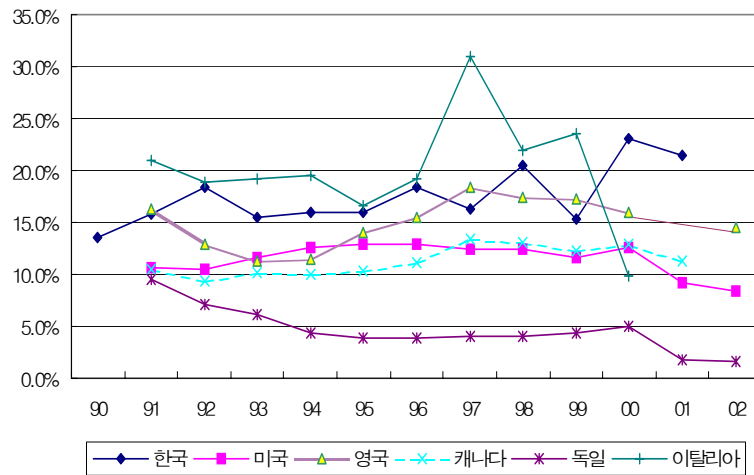
거시지표에 나타난 세부담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 대비 세부담을 보면 우리나라는 변동이 있었지만 최근 증가하여 2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약 13% 수준에서 최근 10% 이하로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도 약 15% 수준에서 낮아진 다음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20% 가까이 높아진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약 15% 수준이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영업잉여 대비 세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것

11)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외함.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3%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1991년의 약 10% 수준에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낮아져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법인의 소득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세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큰 원인은 세무조정이나 손실공제 이연 기간, 각종 조세 감면 등이 외국법인에 비해 불리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 주요국별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중



<표 IV-3> 주요국의 법인세 및 법인잉여의 비교

(단위: 각국화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sup>1)</sup>	법인세	10,776	9,356	17,878	16,975	19,243
	GDP	444,367	482,744	521,959	551,558	596,381
	영업잉여(법인)	52,733	60,848	77,519	79,073	-
	법정최고세율	28.0	28.0	28.0	27.0	27.0
미국	법인세	189	185	208	151	148
	GDP	8,695	9,216	9,765	10,049	10,429
	영업잉여(법인)	1,511	1,587	1,642	1,633	1,768
	법정최고세율	39.0	39.0	39.0	39.0	39.0
영국 <sup>2)</sup>	법인세	35,427	34,408	32,697	-	32,744
	GDP	859,436	903,865	951,265	994,037	1,043,306
	영업잉여(법인)	202,913	199,361	204,322	205,496	224,508
	법정최고세율	31.0	31.0	30.0	30.0	30.0
캐나다	법인세	21,980	23,984	28,774	24,762	21,978
	GDP	900,350	967,511	1,061,042	1,092,135	1,140,428
	영업잉여(법인)	168,510	195,462	223,898	220,205	-
	법정최고세율	28.0	28.0	28.0	27.0	25.0
독일	법인세	13,880	15,720	17,940	6,420	6,430
	GDP	1,929,400	1,978,600	2,030,000	2,074,000	2,107,300
	영업잉여(법인)	350,700	355,650	357,370	374,650	391,870
	법정최고세율	45.0	40.0	40.0	40.0	25.0
프랑스 <sup>3)</sup>	법인세	31,285	37,806	40,297	46,104	39,983
	GDP	1,305,851	1,355,102	1,420,138	1,475,584	1,526,821
	영업잉여(법인)	208,457	216,475	231,576	238,597	239,718
	법정최고세율	33.3	33.3	33.3	33.3	33.3
이탈리아 <sup>4)</sup>	법인세	53,711	59,271	26,366	-	-
	GDP	1,073,019	1,107,994	1,166,548	1,218,535	1,260,428
	영업잉여(법인)	245,544	252,548	268,952	281,141	282,034
	법정최고세율	37.0	37.0	37.0	36.0	36.0

주: 1) 2002년은 영업잉여가 신기준이 적용되어 시계열의 불일치로 사용 못함.

2) 2000년 이후는 발생주의 기준임.

3) 1998년 이후는 발생주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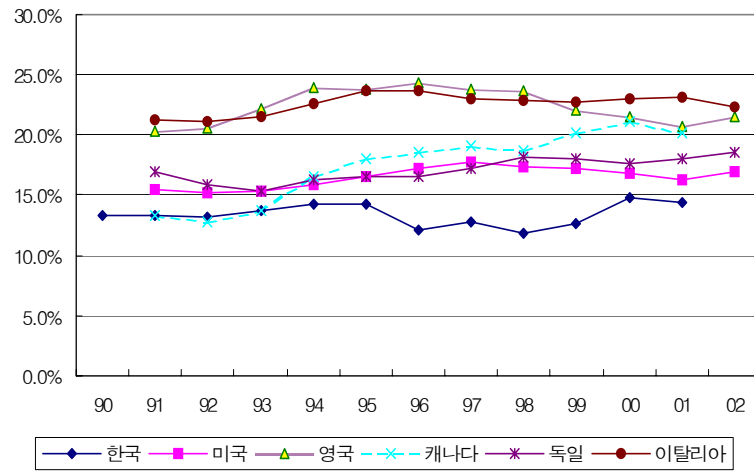
4) 2000년 이후는 발생주의 기준임.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4.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연도.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그림 IV-4] 주요국별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 V. 세부담 측정 - 미시자료

### 1. 측정방법

#### 가. 대상 및 방법 설명

만약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와 납세자료를 갖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실효세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효세율의 변화에 따른 기업활동의 변화나 정부정책의 효율성 등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자료는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는 거시자료를 이용하거나 재무제표를 사용한 실효세율 추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의 평균실효세율을 측정한다<sup>12)</sup>. 비록 한계 실효세율이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앞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사용된 가정의 안정성, 자료의 한계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성(2004)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고 대규모의 조세감면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형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보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실효세율은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와 분모에

---

12) 공공이용이 가능한 재무정보, 즉 주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실효세율 측정한 것이 사회 이슈화된 예로서 미국의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Citizens for Tax Justice) 그룹이 행한 연구(CTJ 1985)를 들 수 있다. CTJ 1985에 의하면 Fortune 500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실효세율을 측정한 결과 1980년대 초에 수익법인의 연방세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평균실효세율에 부합하면서도 자료가 존재하는 방법을 골라야 한다. 우선 법인의 경제적 이익의 변수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손익계산서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총당기순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다. 총당기순이익에서 외부주주지분손실(이익), 연결조정대환입(차상각), 지분법적용회사투자이익(손실)을 고려하면 (2) 당기순이익을 얻는다.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3) 수정영업이익을 얻는다. 달리 영업외수치와 특별이익(손실)을 제외하여 (4) 영업이익을 얻는다. 다음으로 (5) 법인세-금융비용전순수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세 가지를 사용한다. 먼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법인의 총체적인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를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세무목적으로 각종 손금과 익금의 조정을 통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세무조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무자료인 기업의 사업연도소득이나 과세표준에 비해 소득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5년간의 수치를 평균한다. 이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세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세액도 5년 평균치를 사용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이자비용 등 비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손실)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영업이익도 소득의 지표로 보고 세부담을 계산한다.

법인세 부담은 법인세 비용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1999년부터 시행되는 이연법인세제도를 상정하여 이연법인세대와 이연법인세차를 가감하여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을 계산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광의의 법인세

부담을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전주성(2004)의 경우처럼 준조세를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 기부금을 총괄하는 법인지급 부담을 생각할 수도 있다. 법인세의 개념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법인세 비용이지만 1999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부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감안한 법인세 비용을 모두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세액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자료이므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특별부가세, 주민세 등이 포함된다.

#### 나. 미시자료와 거시자료의 차이

세부담 측정에 사용되는 자료로는 거시자료와 미시자료가 있다. 보통 거시자료로는 국민계정, 국세통계자료 등이 사용되며, 미시자료로는 개별 법인의 납세자료, 재무제표자료 등이 사용된다. 따라서 거시자료와 미시자료의 수치가 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식을 사용하자.

평균 실효세율은  $t = T/Y$  ( $Y$ 는 소득,  $T$ 는 세액)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실효세율의 단순평균은  $\sum t_i / n$  ( $n$ 은 기업 수)이 된다. 반면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실효세율이  $\sum T_i / \sum Y_i$ 에 의해 계산된다. 따라서 거시자료를 사용한 실효세율은  $\sum w_i t_i$ ,  $w_i = Y_i / \sum Y_i$ 으로 표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시자료의 경우 개별기업의 비중이  $1/n$ 으로 동일한 반면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기업의 비중은 소득의 규모가 결정한다. 즉, 거시자료는 대기업 위주의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세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가중평균(거시자료)이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단순평균(미시자료)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자료

### 가. 자료 설명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포함되는 범위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이며 사용연도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전체산업)과 금융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조업 등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포함한 분석도 실시한다.<sup>13)</sup>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차감전손익, 영업이익 등을 추출하였다. 세금자료는 법인세 비용항목으로 법인세, 주민세 등을 포함한 법인의 세액이다. 정확한 법인세 부담을 알기 위하여 당년도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자료 모두를 추출하였다. 이연법인세제도가 1999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재무제표상에서 법인세비용으로 표시되는 항목의 내용이 달라졌다. 즉, 1999년 이전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항목이 법인의 납부세액이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기업회계상의 수익(비용)과 세법상의 익금(손금)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업연도의 납부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비용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 이후의 법인세비용이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액으로 보아 1999년 이후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만, 이전의 자료와의 일관성을 위해서 1999년 이후의 법인세비용을 조정(이연법인세대와 이연법인세차 항목을 빼고 더하여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1999년 이전의 납부세액으로 변환해서 1990년 이후부

13) 금융업의 숫자가 128개, 0.17%에 불과하므로 실제적으로 금융업 포함 여부가 평균세율계산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음.

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그 외에도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자비용, 특별이익, 매출액 등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것 이외에 제조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및 노무비가 있다. 예를 들어,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마모되는 감가상각 부분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므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만을 살펴볼 경우 상당히 작게 나타날 여지가 존재한다. 또 인건비의 경우도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는 관리와 유통과정에서의 인건비만을 포착한다. 따라서 제조원가에 노무비로 되어 있는 생산현장이나 공장 등의 임금을 합산해 주어야 기업전체의 인건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인건비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를 합하여 사용하였고,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감가상각비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신용평가에서 분류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제조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20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기업현황자료로 기업코드, 기업명, 산업코드, 형태(상장, 외감, 기타), 규모, 상장일 등도 추출하였다.

추출 대상이 되는 변수가 missing(-)인 경우는 제외하였는데, 변수에 따라 missing(-)수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각각의 변수를 분석할 때마다 해당변수에 대해서만 missing(-)을 제외한 다른 dataset을 구성해서 사용하였다. <표 V-1>의 자료의 분포는 가장 주요한 변수로 사용된 법인세가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등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제외한 dataset을 이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또한 기업에 따라 결산일을 변경한 기업

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업의 경우 일년에 두 번 이상 재무제표를 게시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아 먼저 발표한 재무제표의 자료는 제거하였다.

조정한 자료의 분포를 연도별,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연도별로는 1990년에 약 2,500개에서 2000년 이후에는 약 8,500개 정도의 자료가 있다<sup>14)</sup>. 분석 연도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가 74,399개가 된다.

<표 V-1> 연도별 업종별 자료의 분포

(단위: 개, %)

연도별	빈도수	백분율	업종별	빈도수	백분율
1990	2,542	3.42	농업,임업	114	0.15
1991	2,881	3.87	어업	188	0.25
1992	2,891	3.89	광업	266	0.36
1993	2,928	3.94	제조업	44,159	59.35
1994	3,449	4.64	전기,가스등	442	0.59
1995	4,256	5.72	건설업	7,790	10.47
1996	4,611	6.2	도소매업	7,550	10.15
1997	5,145	6.92	숙박,음식	999	1.34
1998	5,336	7.17	운수업	2,540	3.41
1999	6,945	9.33	통신업	276	0.37
2000	7,671	10.31	금융,보험	128	0.17
2001	8,317	11.18	부동산,임대	3,063	4.12
2002	8,827	11.86	사업서비스	4,301	5.78
2003	8,600	11.56	교육서비스	105	0.14
합 계	74,399	100.00	보건복지	2	0.00
			오락,문화등	1,990	2.67
			공공,개인	486	0.65
			합 계	74,399	100.00

14) 한국신용평가의 전체 자료를 보면 1990년에 약 3,000개에서 기업수가 점점 증가하여 2001년에는 기업 수가 1만개를 초과함.

&lt;표 V-2&gt; 규모별, 기업공개별 자료의 분포

(단위: 개, %)

		상장	등록	외감	전체
대기업	빈도	5,586	1,572	6,317	13,475
	백분율	7.5	2.1	8.5	18.1
중소기업	빈도	8,359	6,039	46,526	60,924
	백분율	11.2	8.1	62.5	81.9
전체	빈도	13,945	7,611	52,843	74,399
	백분율	18.7	10.2	71.0	100.0

업종별로는 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20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였으나 한국신용평가 자료에서는 행정국방, 오락문화, 가사서비스, 국제외국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도 관측치가 2개에 불과하여 업종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59.4%로 가장 많고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는 규모별, 기업공개별로 자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규모는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뉘져 있으며 기업공개별로는 한신평 자료 중 본고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는 상장, 등록, 외감기업까지를 포괄하였다. 전체 74,399개의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81.9%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이 13,945개로 18.7%를 나타내고 있고, 등록법인이 10.2%, 외부감사 법인이 71.0%를 나타내고 있다.

#### 나. 자료의 조정

한국신용평가의 자료는 상장, 등록 및 외감기업에 대한 자료이다. 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다수의 소규모 법인이 존재하므로 법인

세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 법인의 숫자는 한국신용평가의 자료보다 훨씬 많다. 즉, 한국신용평가의 자료는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통계연보』상의 법인의 표본이지만 대기업 위주의 표본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비중을 조정하였다.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보면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외형, 자산, 업종 등이 있다. 비중 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종합하여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너무 작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형에 대해서만 비중을 조정한다<sup>15)</sup>. 이렇게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대규모 기업 위주라는 한국신용평가자료의 약점을 축소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조정할 수는 없다는 약점이 있다.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보면 외형기준으로 5억원 미만 법인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5억원 이상 법인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외형 5억원 미만 법인의 비중 추이를 보면 1991년 52.5%에서 1995년 47.1%의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에는 57%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를 고려하면 5억원 미만 법인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야 하지만 다수의 소규모 법인이 새로 설립됨으로써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보면 1991년 대비 업태별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이다. 반면 건설업, 서비스업, 도매업은 비중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p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2.1%p, 서비스업은 1.9%p, 도매업은 1.6%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15) 업태 및 외형기준 법인 비중에 대한 자료는 <부록> 참조.

&lt;표 V-3&gt; 외형 기준 법인 비중

(단위: %)

	5억원미만	5억~30억원	30억~100억원	100억원 이상
1990	52.86	32.25	10.50	4.39
1991	52.48	31.72	11.11	4.69
1992	51.97	32.32	10.93	4.77
1993	49.96	33.81	11.40	4.83
1994	48.16	34.88	12.04	4.91
1995	47.10	35.02	12.54	5.35
1996	49.27	33.56	12.17	4.99
1997	48.41	33.95	12.50	5.14
1998	48.18	35.06	11.65	5.11
1999	49.89	33.77	11.44	4.90
2000	57.24	28.76	9.78	4.22
2001	57.13	28.76	9.87	4.23
2002	55.69	29.97	10.10	4.25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lt;표 V-4&gt; 업태별 법인 비중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운수
1991	0.7	32.9	0.1	17.9	19.9	2.1	0.6	5.1
1992	0.7	31.1	0.0	20.4	20.6	2.4	0.6	4.8
1993	0.8	31.6	0.1	19.5	21.5	2.2	0.6	4.6
1994	0.8	31.0	0.0	20.4	21.3	2.1	0.6	4.3
1995	0.7	30.5	0.0	20.7	21.8	2.1	0.5	4.2
1996	0.6	30.0	0.0	20.5	22.2	2.0	0.6	4.1
1997	0.6	29.1	0.1	20.3	22.7	2.0	0.6	4.0
1998	0.6	28.7	0.1	19.6	22.4	2.0	0.6	4.0
1999	0.6	28.9	0.1	19.6	21.9	2.3	0.7	3.8
2000	0.5	29.0	0.1	19.3	21.5	2.3	0.7	3.9
2001	0.4	27.4	0.1	19.9	20.4	2.4	0.6	6.6
2002	0.3	27.1	0.1	20.0	21.5	2.4	0.6	6.3

	부동산업	서비스업	어업	산림업	축산업	의료업	기타산업
1991	3.2	15.3	0.3	0.1	0.2	0.3	1.4
1992	2.9	14.5	0.2	0.1	0.1	0.3	1.3
1993	2.7	14.4	0.2	0.1	0.1	0.3	1.4
1994	2.6	14.4	0.2	0.0	0.2	0.2	1.8
1995	2.4	14.3	0.3	0.1	0.3	0.2	1.9
1996	2.3	14.9	0.2	0.1	0.3	0.3	2.0
1997	2.2	15.6	0.2	0.1	0.3	0.2	2.1
1998	2.2	16.4	0.2	0.1	0.3	0.2	2.5
1999	2.2	16.3	0.2	0.1	0.3	0.2	2.9
2000	1.9	18.3	0.2	0.1	0.2	0.2	1.7
2001	2.1	17.4	0.3	0.2	0.4	0.2	1.5
2002	2.3	17.2	0.3	0.3	0.4	0.2	1.0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3. 평균실효세율 - 납부액 기준

#### 가 전체 기업

본 절에서는 개별 기업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평균실효세율을 살펴본다. 먼저 전체기업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평균의 경우에는 외형 구간별로 평균을 구한 다음, 해당 평균에 외형구간별 비중을 적용하여 구한 값이다. 반면 중간값은 비중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업별 평균세율(세금/소득)의 중간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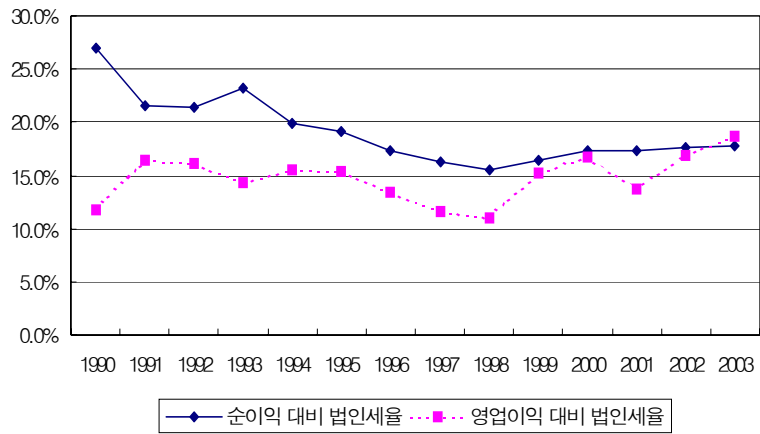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하에서는 ‘순이익’이라고 한다.) 대비 세금 부담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을 보면 1991년의 약 22% 수준에서 2003년에는 약 1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에는 평균세율이 하락하는 양상으로 보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약간 증가하여 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담 계산결과를 보면 평균세율은 1991년의 약 17% 수준에서 2003년에는 약 18%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이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시자료를 이용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1년의 경우 거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의 조세부담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보다는 낮지만 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법인의 세부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거시자료와 미시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거시자료와 미시자료의 차이 때문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대비 세부담의 차이는 영업외 수지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영업이익대비 평균세율이 순이익 대비 평균세율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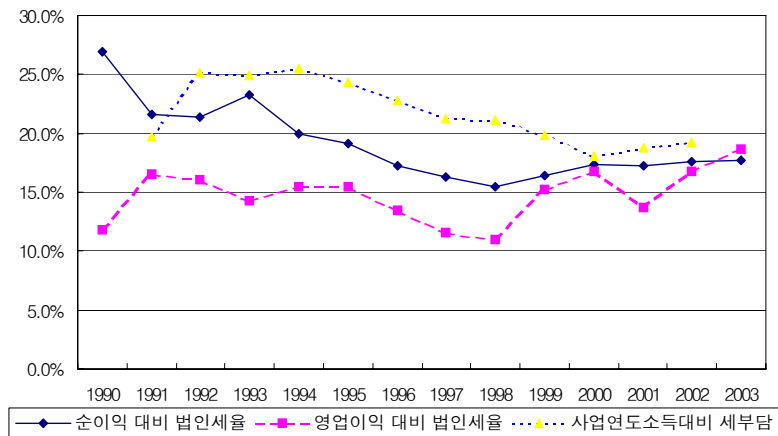
$$t = T / (A + B), \tau = T / A, \quad A: \text{영업이익}, B: \text{영업외수지}$$

$$\tau < t \quad \Rightarrow \quad B < 0$$

[그림 V-1]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평균값)



[그림 V-2] 미시·거시자료 기준 법인의 조세부담 비교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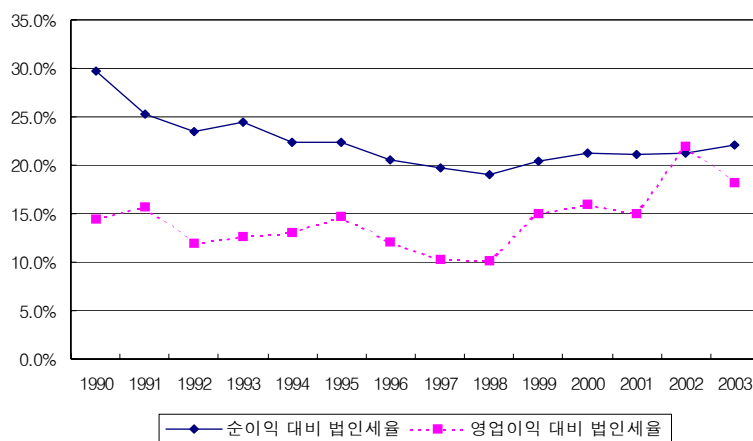


주: 거시자료는 『국세통계연보』의 법인 신고자료 기준.

낮다는 의미는 영업외수지가 적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이자비용이나 외환손실 등 영업외비용이 이자수익이나 부동산매각 이익 등 영업외수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를 보면 순이익과 영업이익 기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기간은 1990년대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영업외손실이 영업외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간값 기준으로 조세부담을 계산한 자료를 살펴보자. 중간값의 경우 외형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있는 기업의 평균세율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많이 포함된 자료의 평균세율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약 30%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8년에는 20% 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미미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1998년에는 10%

[그림 V-3]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중간값)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최근에는 20% 전후로 증가하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기준의 평균세율이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업외수지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양자간 차이가 거의 없어진 이유는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영업외수지가 거의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나 시장이자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기업규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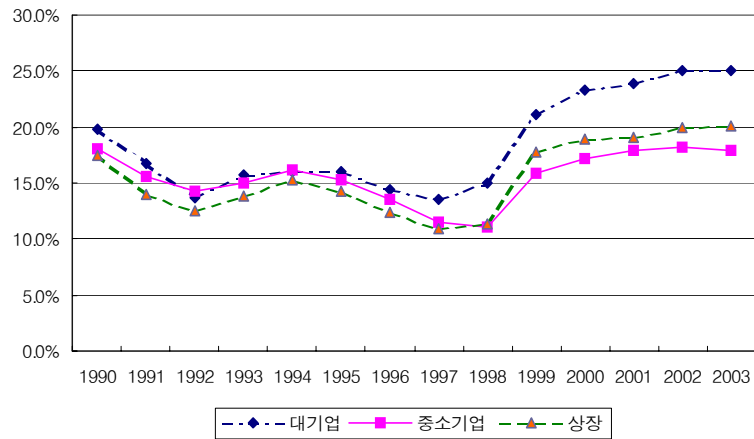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로 조세부담을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기업의 평균세율의 중간값 및 평균자료를 사용하였고, 비중 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기업은 제외된 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계산결과를 보면 순이익 및 중간값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기업 모두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 이후로는 세부담의 하락 추세가 거의 멈추었거나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1990년 순이익 대비 세액이 약 35% 수준에서 최근 26%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에 약 32%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상장기업도 같은 기간에 32% 수준에서 2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장기업의 세부담 하락 정도가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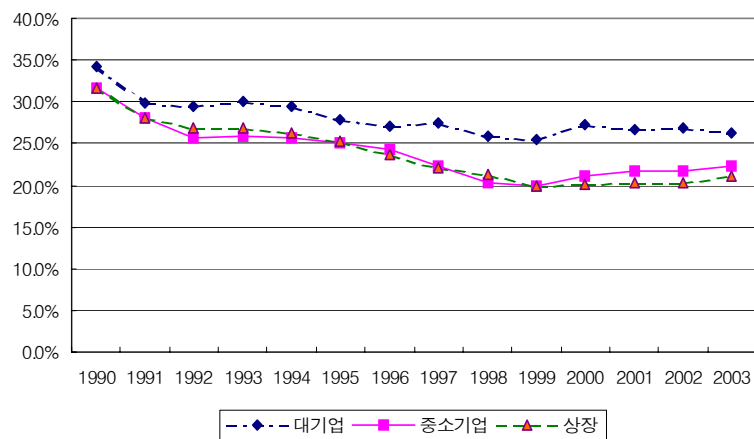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1990년대 중후반까지 등락이 있지만 하향 추세를 보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로는 급속히 증가하여 순이익 기준과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1990년 순이익 대비 세액이 약 20% 수준에서 최근 25%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에 약 18%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장기업도 같은 기간에 18%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순이익 및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수치의 차이는 앞에서 분석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비롯한다. 즉, 영업외수지가 개선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V-4]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중간값, 기업규모별)



[그림 V-5]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 (중간값, 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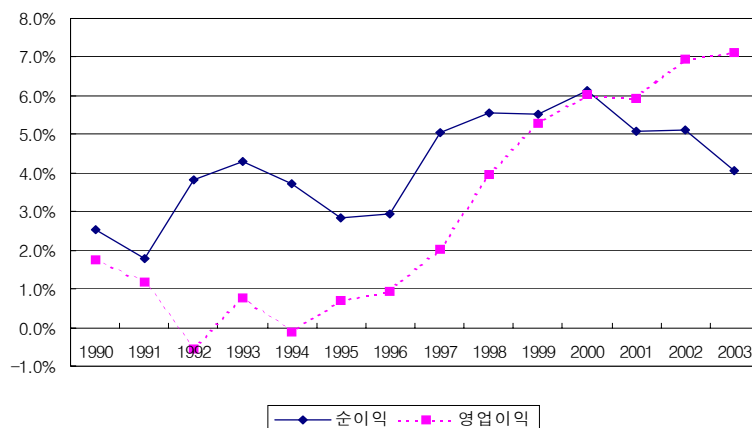


그리고 중소기업도 순이익 기준과 영업이익 기준의 차이가 축소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양자간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업외수지가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에 비해 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약 2%p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 1996년까지는 3%p 또는 그 이상이었고, 이후 2000년에 6%p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5%p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율 격차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의 영향도 있지만 이중 세율구조로 인하여 대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1991년을 제외한 1996년까지 세부담 격차가 1%p 미만이었으나 이후에는 양자간 격차가 확대되어 2003년에는 7%p까지 확대되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영업이익 대비 조세부담 격차가 순이익 대비보다 커진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업외수지의 개선에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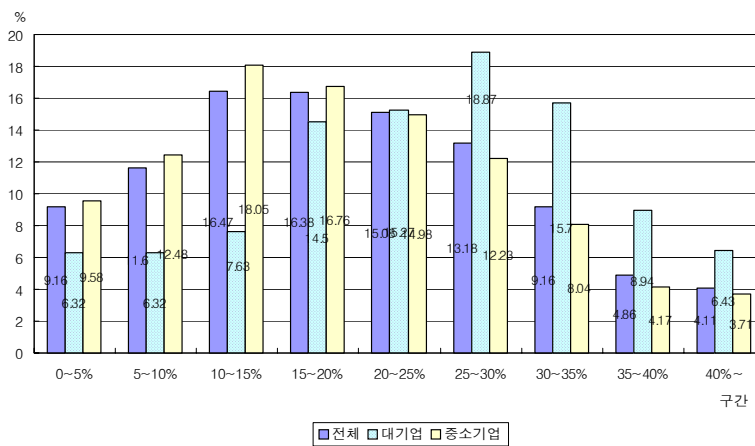
[그림 V-6]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부담 격차(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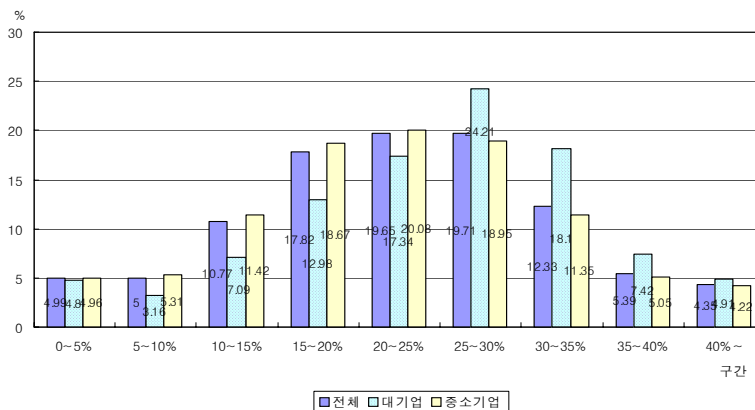
V. 세부담 측정 - 미시자료 83

순이익 기준 실효세율 분포를 보면 대기업은 25~35%대에 가장 많은 수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0%~20%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35% 이상인 기업이 약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7] 법인세율의 분포(영업이익 대비, 2003년 기준)



[그림 V-8] 법인세율의 분포(순이익 대비, 200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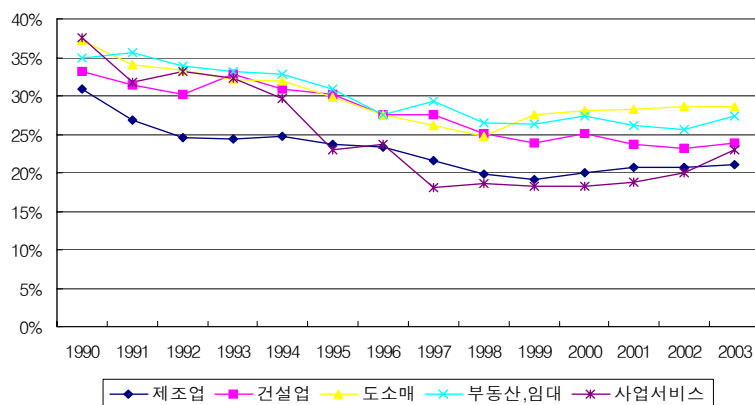


#### 다. 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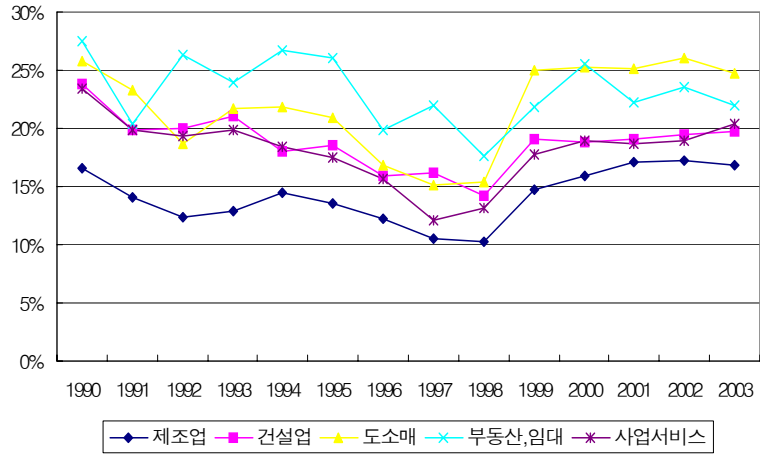
다음으로 산업별 실효세율을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비중 조정은 하지 않고, 한국신용평가의 자료를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5~28%의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별 조세부담 격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 기준으로 4~8%p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 격차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산업별로 적정한 조세부담의 차이를 논의할 기준은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산업을 기준으로 한 각종 조세감면의 조정에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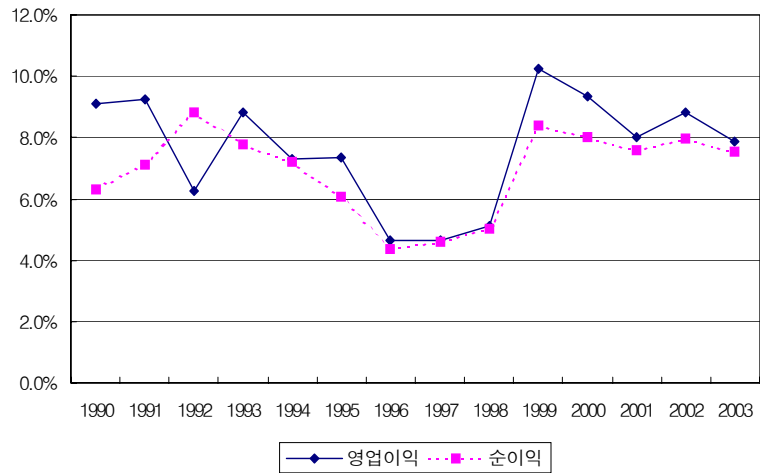
[그림 V-9] 산업별 법인세율(순이익, 중간값 기준)



[그림 V-10] 산업별 법인세율(영업이익, 중간값 기준)



[그림 V-11]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중간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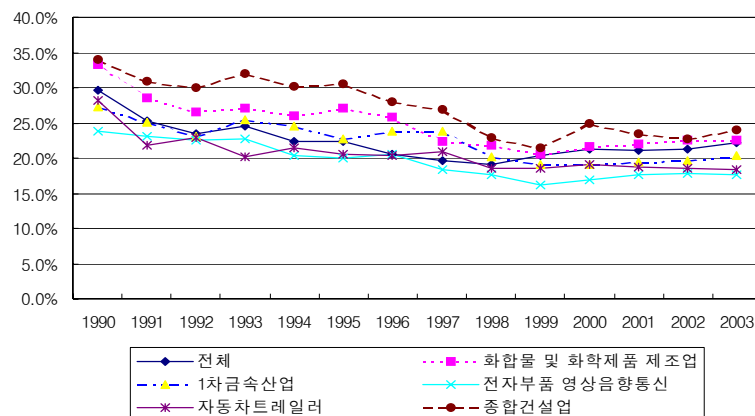


## 라. 제조업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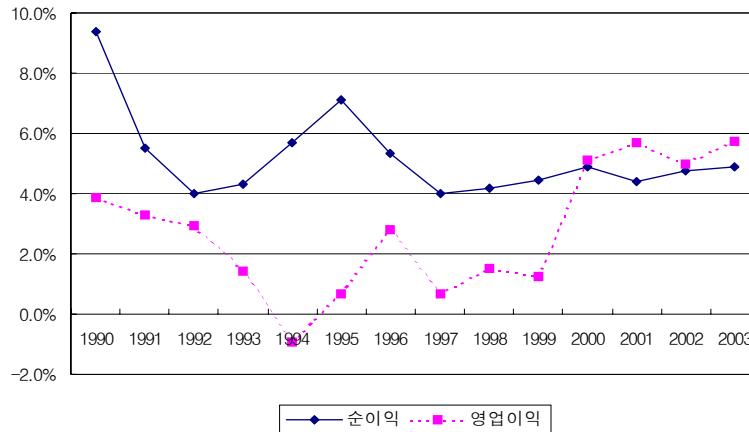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다. 그렇다면 제조업종간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영상통신 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부품·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경우 실효세율이 최근에는 23% 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태이며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최근 18% 전후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 업종별 세부담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에는 실효세율이 23~33%의 구간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에 그 폭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약 18~25%의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순이익은 1995년을 제외하고는 약 4~6%p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990년대에는 4%p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세부담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업종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12] 순이익 대비 세부담(중간값 기준)



[그림 V-13] 화학제품제조업과 전자부품의 세부담 격차  
(중간값 기준)



마. 소득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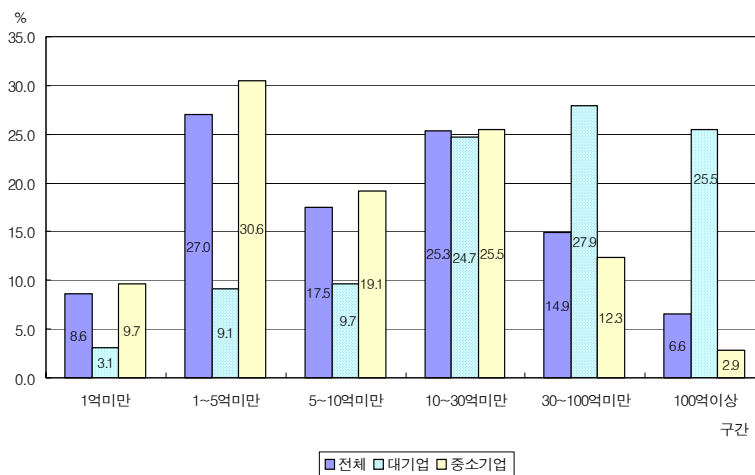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득규모별로 실효세율 부담을 살펴보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1억 이상 ~ 5억원 미만이 27%로 가장 많고, 10억 이상 ~ 30억원 미만이 25.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분포를 따르기 때문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1억 이상 ~ 5억원 미만이 30.6%로 가장 많고, 10억 이상 ~ 30억원 미만이 25.5%로 그 다음이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30억 이상 ~ 100억원 미만이 27.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00억원 이상이 많다.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의 기업은 최근 세부담이 거의 비슷한 26~2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반면 1억 이상 ~ 5억원 미만은 순이익이 더 큰 기업에 비해 3~4%p 정도 세부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급격히 낮아져, 최근에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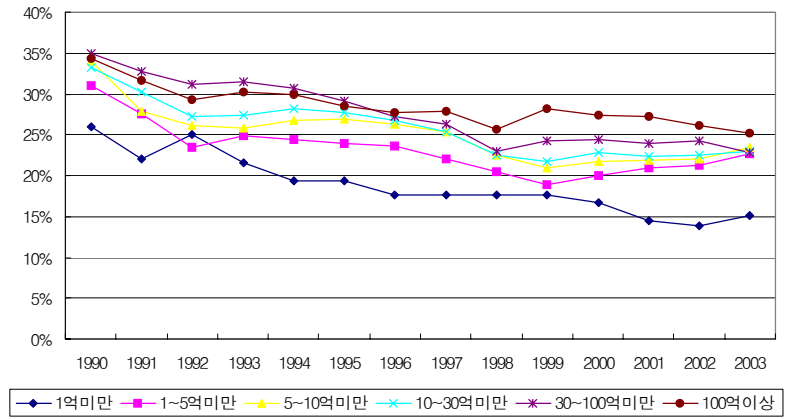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03년을 제외하면 1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서도 순이익의 규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은 약 22~23%로 나타났다. 이는 1억 이상 ~ 5억원 미만은 순이익을 낸 대기업과 비슷한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동일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5억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한 대기업에 비해 3~4%p 정도 낮은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직면하는 세율이 최고세율로 동일하므로 양자간 격차는 각종 조세감면,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별로 영업이익 기준 세부담은 소득과 영업이익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 기준보다 소득별 실효세율 편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해당 자료는 <부록>에 있다).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큰 기업이 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익이 큰 기업의 영업외수지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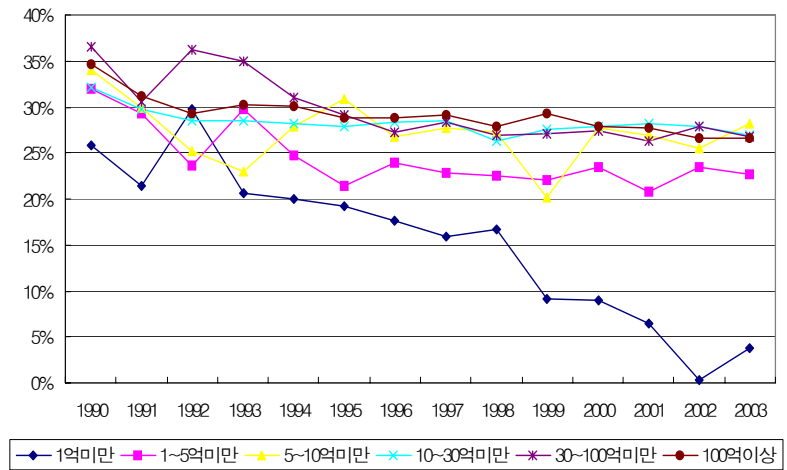
[그림 V-14] 소득별 기업규모의 분포(순이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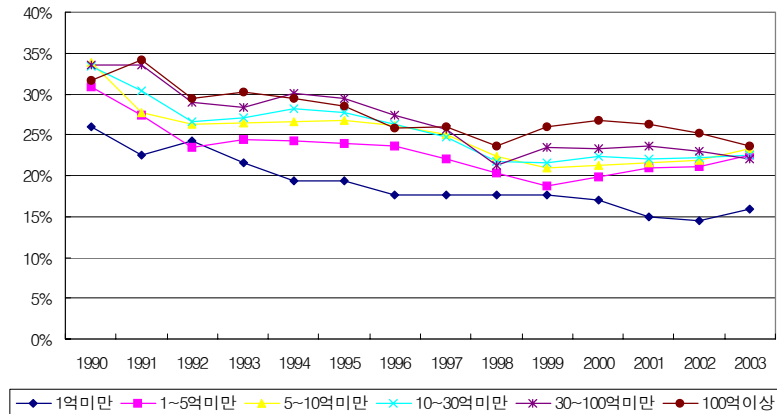
[그림 V-15] 소득별 법인세율(전체-순이익, 중간값)



[그림 V-16] 소득별 법인세율(대기업-순이익, 중간값)



[그림 V-17] 소득별 법인세율(중소기업-순이익,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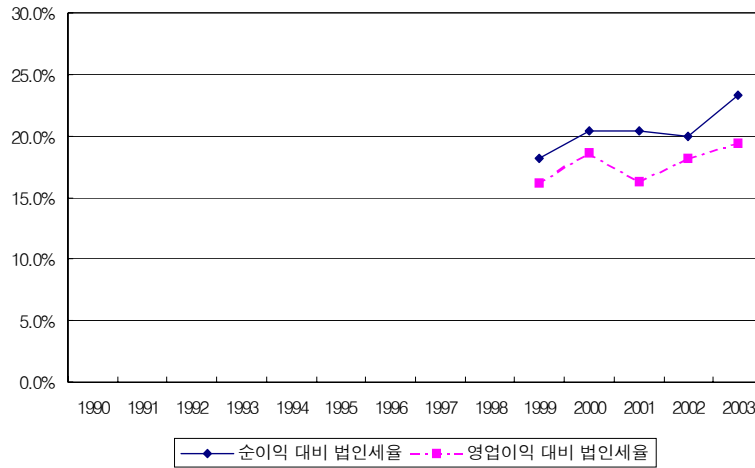
#### 4. 평균실효세율 - 이연법인세 기준

제1절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연법인세제도가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1999년도 이후의 법인세비용을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액으로 보고 분석한다. 제시하는 그림은 분석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설명은 1999년 이후만으로 한정한다.

##### 가. 전체 기업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99년 이후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의 경우 1999년 약 18%에서 2003년 약 24%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1999년 약 16%에서 2003년 약 20%로 4%p 정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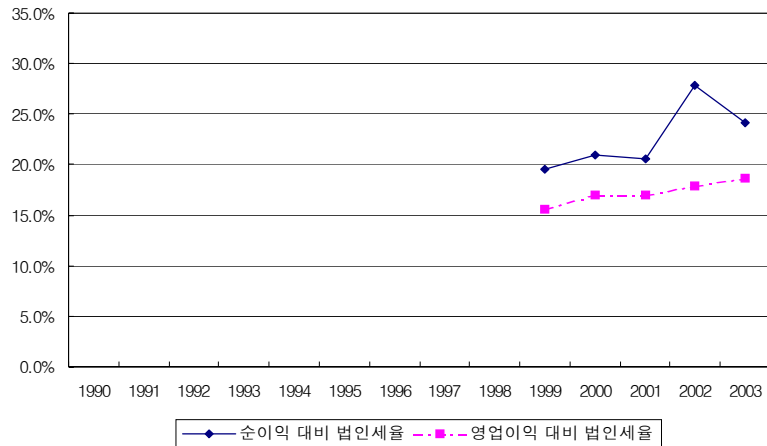
[그림 V-18] 이연법인세율 추이-전체(평균값)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 납부액 기준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순이익 대비 세금 부담은 1999년 약 17%에서 2003년 약 18%로 거의 변화가 없다.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2003년에 약 24% 수준이므로 납부액보다 법인세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업이익 대비로 살펴보면 1999년 약 15%에서 2003년 약 19%로 증가하였다. 이는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약 1%p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자료에 있는 기업의 평균세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경우를 보면 법인의 평균세율은 순이익 기준으로 1999년 약 20%에서 2003년 약 24%로 증가하였다. 또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1999년 약 15%에서 2003년 18%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즉, 기업체수에 대한 비중을 활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V-19] 이연법인세율 추이-전체(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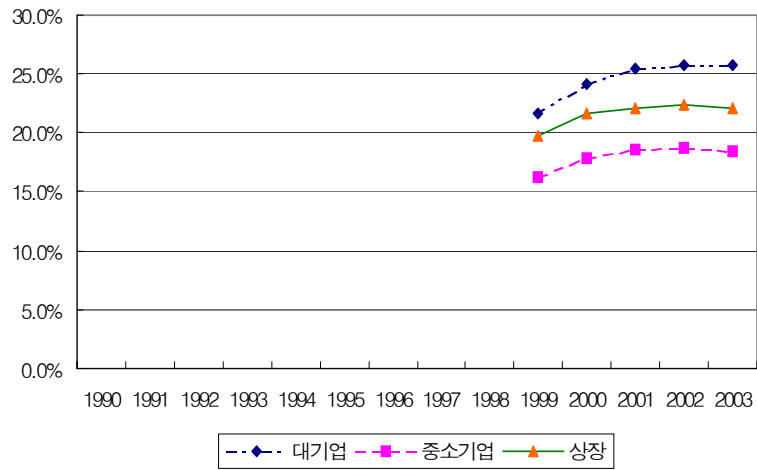


이를 납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동기간에 약 20% 수준에서 2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즉,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세부담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은 1999년 15%에서 2003년 18%로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한 수준은 거의 동일하지만 연도별 등락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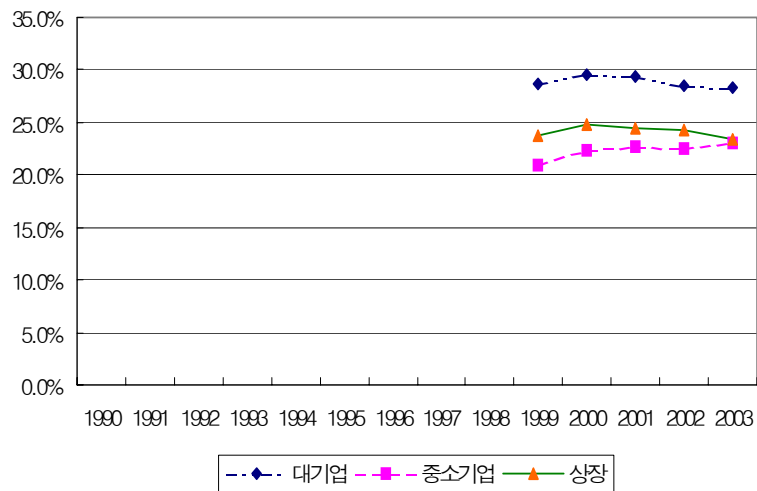
#### 나. 기업규모별

다음으로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자. 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체적인 모양새는 납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의 경우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납부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20]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중간값, 기업규모별)



[그림 V-21]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중간값, 기업규모별)



## 5. 평균실효세율 - 5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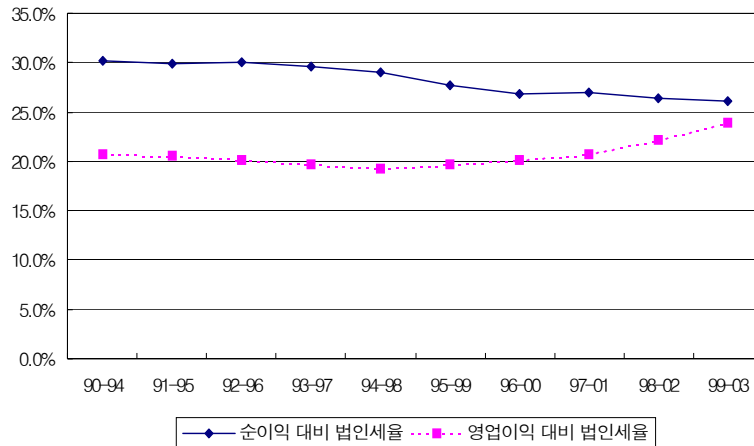
손실의 이월 등으로 인하여 단년도를 기준으로 법인의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다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소득 대비 세액을 계산하여 평균실효세율을 구하였다. 이 경우 동일 기업이 분석 대상이므로 자료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에 계속적으로 포함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법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의 세부담이 이전 자료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가. 전체 기업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세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0년대에 미미한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즉, 순이익 기준으로는 하락 추세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가 여기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본 경우 순이익 기준 법인세율은 1990~1994년에 약 32%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평균실효세율의 하락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990~1994년에 약 22%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3%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거나 다소 높아졌다. 단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5년 기준은 합산으로 발생하는 평균 효과에 의해 변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22] 법인세율 추이 - 전체(5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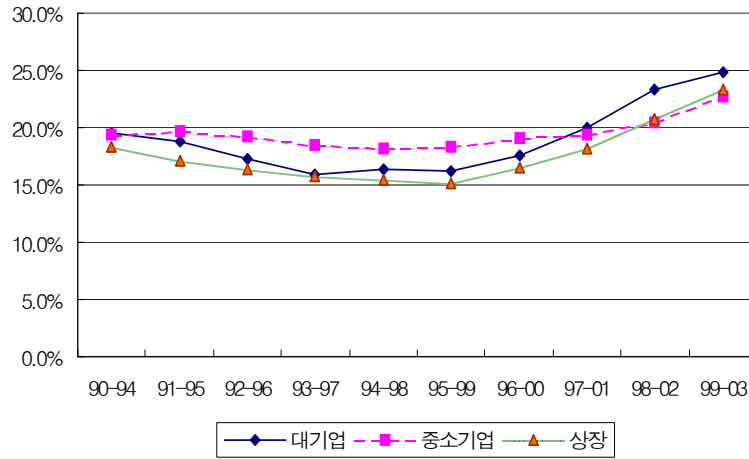


나. 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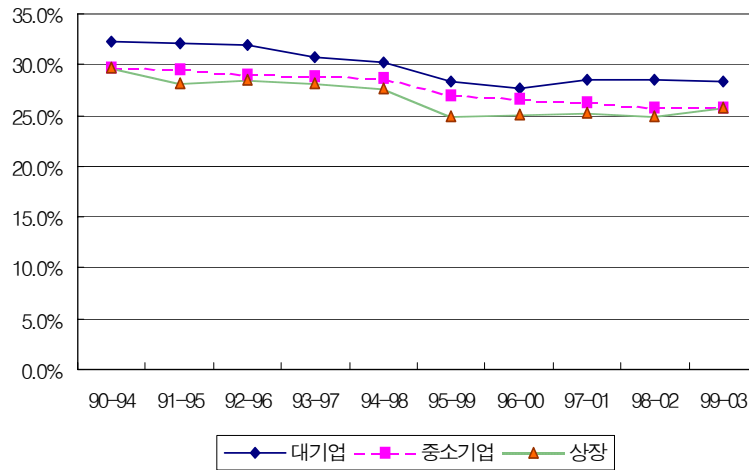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순이익 기준으로 1990~1994년에 약 35%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990~1994년에 약 22%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3%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순이익 기준으로 대기업보다 다소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다. 즉, 1990~1994년에 약 30%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990~1994년에 약 22% 수준이었으나 1999~2003년 기간에는 23% 수준으로 대기업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율 격차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23]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중간값, 5년평균, 기업규모별)



[그림 V-24]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중간값, 5년평균, 기업규모별)



단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의 실

효세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추출된 자료가 해당 기간 동안 존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을 위주로 추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년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보면 이월공제 등을 감안할 수 있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5년 평균 방식은 법인세 부담의 추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담의 크기가 다소 높게 나타나므로 세부담의 지표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부 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의 두 가지 기준 중에서는 법인세비용이 실제적인 법인세 부담과 가까우므로 법인세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비용 자료가 1999년부터 존재하므로 아직은 기간이 짧아 추세 분석에 불리한 요소가 있지만 자료가 축적되면 바람직한 분석 기준이 될 것이다.

## 6. 외국과의 비교

### 가. 자 료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인세 세부담을 외국과 비교하는 경우에 주로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 SA에서 제공하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를 시도한다. 해당 자료는 전 세계 주요 기업에 대해서 재무자료, 소유구조, 신용등급, 주가자료 등을 공급하고 있다.

각 국가별 평균유효법인세율을 측정/비교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 중에서 G7국가(독일 제외<sup>16)</sup>) 및 동아시아 4개 국가와 한국의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를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은

16) BvD에서 제공하는 독일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금융업은 제외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추출 대상이 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인세가 음(-)인 기업은 제외하였다.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기업도 제외하였다. 또한 각 국가별 기업의 수(표본의 수)는 현저하게 작아 상당한 편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 세부담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이월결손금 처리, 이연법인세 조정, 조세감면 등)은 무시하기로 한다. 한편 각 국가별 기업회계기준, 감가상각 조정, 명목세율 및 세무조정 등이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결과를 각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표 V-5> 국가별 조사 대상 표본의 수(2003년 기준)

(단위: 개)

G7 국가						동아시아 국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한국
3,261	1,621	178	2,664	801	730	249	332	264	264	867

#### 나. 분석 결과

영업이익기준 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을 보면, 대체로 G7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점별로 5~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명목세율이 높은 일본(지방세를 포함한 최종세율은 40.87%)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sup>17)</sup>. 동아시아 국가는 대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는 하향추세를 보인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인 1999

17) 각 국의 명목세율에 대한 자료는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 한국조세연구원) 참고.

년에 약 7%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도 대체로 유사하다.

순이익 대비 평균실효세율도 G7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영업이익기준 대비 세부담과 비교하면 순이익 대비 평균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영업외수지 적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료에 포함되는 기업은 대체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를 고려하면 기존의 결과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의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G7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의 평균유효법인세율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이전 5개년에 대한 각 국가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법인세를 조사하였다.

G7 국가의 경우에, 영업이익 기준하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평균유효법인세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평균유효법인세율의 하향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히려 태국과 홍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순이익 기준하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6&gt;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호법인세율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G7 국가 (독일제외)	미국	29.05	28.32	29.14	29.96	29.43
	영국	24.83	22.04	22.58	24.65	29.13
	이탈리아	16.68	22.77	31.46	30.59	31.32
	일본	42.52	34.57	34.00	35.50	35.50
	캐나다	23.74	26.40	25.78	23.23	25.69
	프랑스	25.17	26.19	28.08	28.63	29.12
동아시아 국가	대만	15.60	18.38	13.63	12.34	12.15
	싱가포르	23.81	23.82	23.57	25.42	24.26
	태국	22.42	22.78	20.57	21.45	19.52
	홍콩	17.21	14.71	18.63	15.18	13.21
한국		20.76	18.00	16.29	15.75	15.78
		1999	2000	2001	2002	2003
G7 국가 (독일제외)	미국	30.11	31.33	27.07	26.61	26.84
	영국	26.72	24.49	23.22	26.83	25.90
	이탈리아	36.46	34.70	31.71	34.89	30.05
	일본	39.43	31.11	32.67	33.43	34.02
	캐나다	27.81	27.80	25.31	24.46	23.46
	프랑스	29.60	31.11	30.15	30.66	24.98
동아시아 국가	대만	14.64	14.39	13.28	13.01	10.95
	싱가포르	21.56	20.60	24.11	21.17	14.87
	태국	13.63	14.56	15.91	18.48	17.86
	홍콩	10.23	14.62	16.48	16.92	19.05
한국		22.92	23.83	24.13	28.63	24.25

<표 V-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호법인세율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G7 국가 (독일제외)	미국	35.47	34.95	34.92	35.31	33.41
	영국	30.03	30.21	29.68	30.78	32.77
	이탈리아	41.09	33.95	40.20	43.00	38.92
	일본	58.66	55.72	52.32	51.45	51.80
	캐나다	34.12	36.19	35.49	33.92	34.14
	프랑스	32.76	33.57	34.00	32.74	33.50
동아시아 국가	대만	17.33	24.31	20.22	14.81	14.63
	싱가포르	23.89	24.02	24.03	25.33	24.99
	태국	28.77	28.74	26.16	27.27	19.90
	홍콩	12.99	11.94	10.64	11.86	15.02
한국		34.23	31.67	31.53	30.64	2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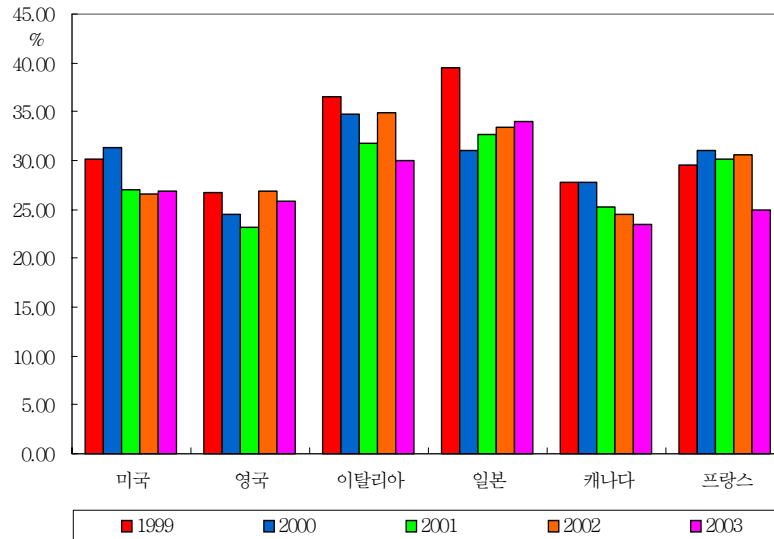
  

		1999	2000	2001	2002	2003
G7 국가 (독일제외)	미국	34.89	35.31	35.24	32.13	31.88
	영국	30.13	27.89	28.87	30.48	31.32
	이탈리아	39.13	44.46	33.71	36.31	37.47
	일본	52.24	47.73	41.39	44.86	43.70
	캐나다	36.05	35.12	32.48	31.57	28.37
	프랑스	34.75	33.55	34.66	37.29	28.48
동아시아 국가	대만	16.90	16.78	16.10	15.72	12.74
	싱가포르	22.03	21.01	22.93	24.43	17.43
	태국	18.12	22.15	22.99	24.31	20.45
	홍콩	6.27	14.03	18.83	18.29	20.82
한국		29.18	24.37	27.02	25.89	2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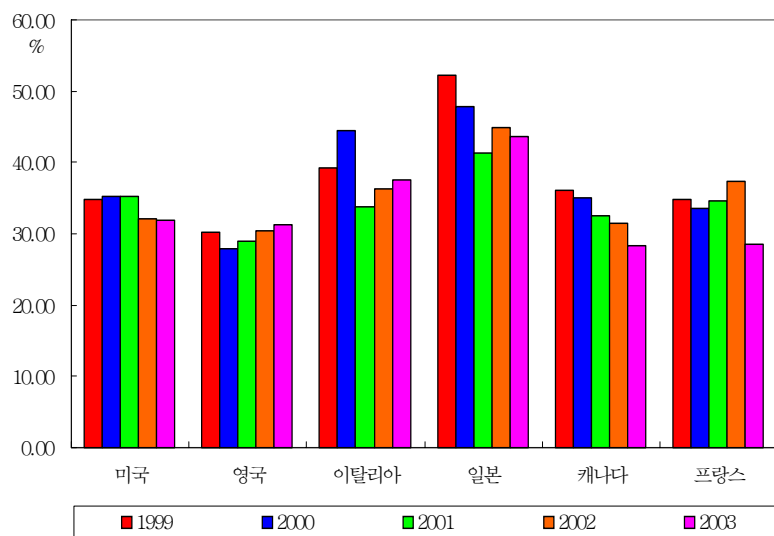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G7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명목세율이 40%수준에 가까웠던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등은 최근 명목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5%이하의 낮은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G7 국가에 비해 평균실효세율이 낮게 추정되는 것이다. 또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과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개발도상국 간에는 뚜렷한 세부담 격차가 있다. 즉 선진국은 선진국끼리,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끼리 유사한 조세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법인세부담은 증가하고 선진국은 세부담이 감소하여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 국제자본 유치에 있어 경쟁이 되는 나라가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가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요 경쟁국가의 법인세 세부담 비교가 향후 한국의 법인세 정책 입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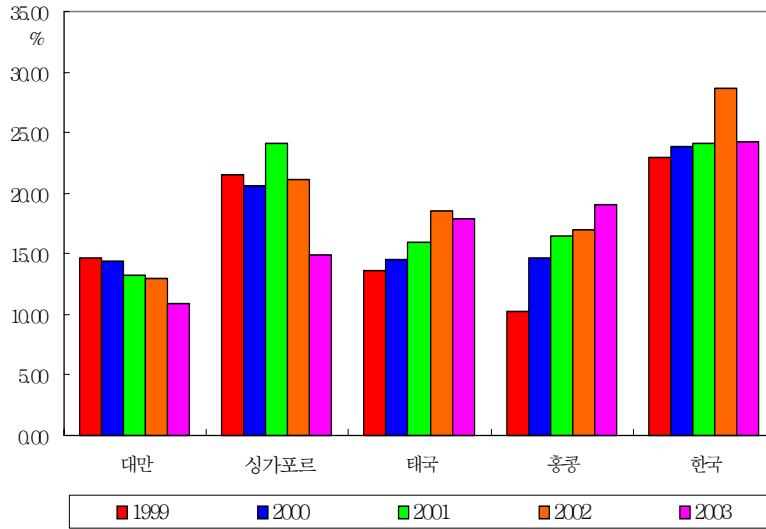
[그림 V-25] G7 국가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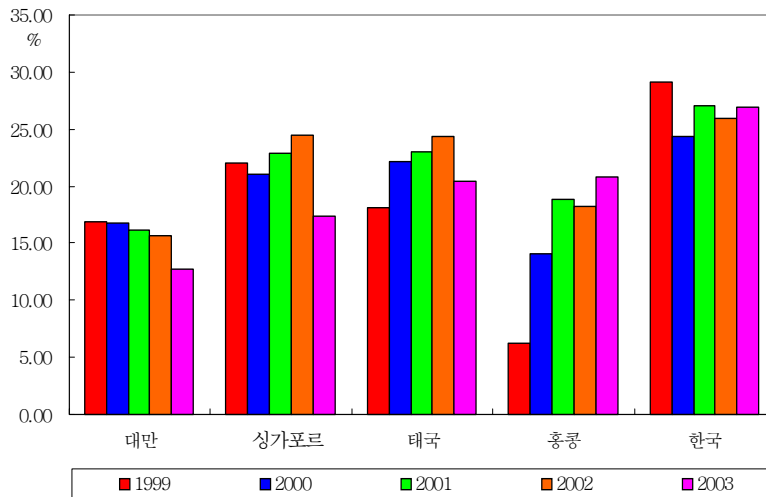
[그림 V-26] G7 국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그림 V-27] 동아시아 국가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그림 V-28] 동아시아 국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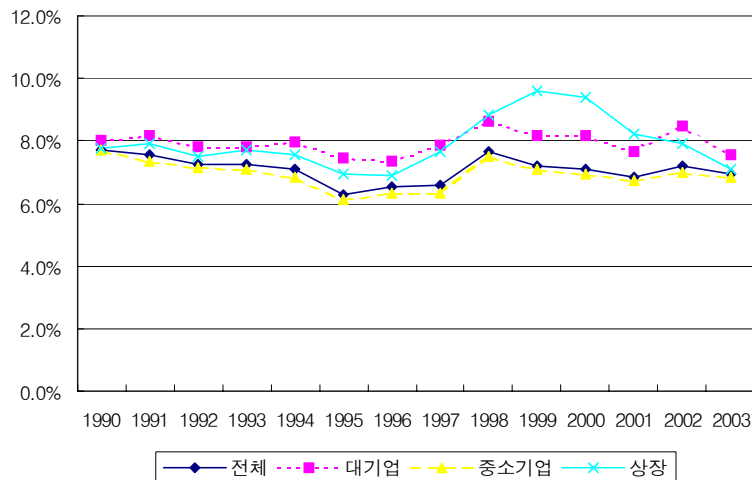


## 7. 기업수지 변화 요인

### 가. 영업수지

다음으로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자.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기업의 경우(중소기업과 거의 동일)를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1991년의 약 8%에서 7%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7%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8%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에 영업수지의 개선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1996년을 저점으로 하여 1999년도까지 매출액 대비 영업수지의 개선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시점에 매출의 감소가 있었지만 영업수지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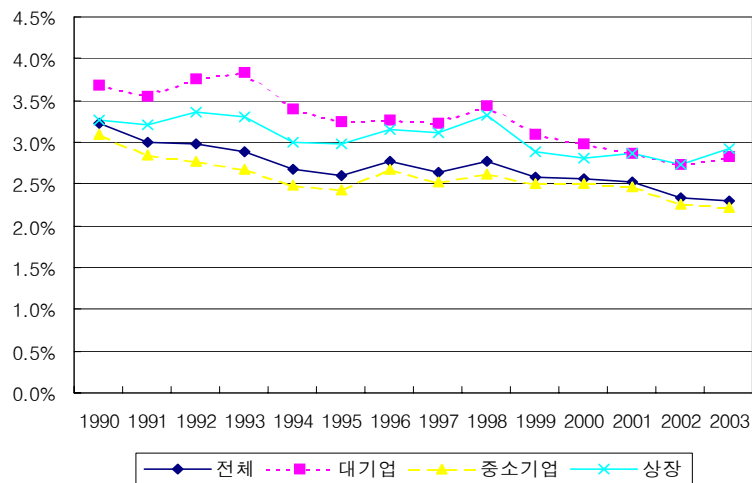
[그림 V-29] 매출액 대비 영업수지(중간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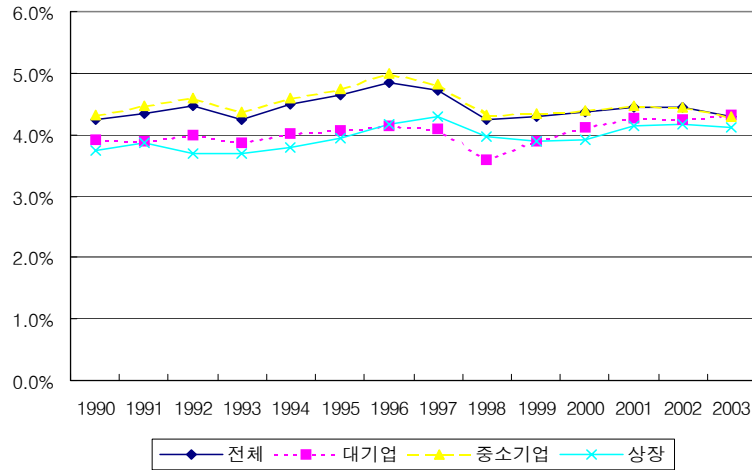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감가상각과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감가상각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1990년에 매출액 대비 3.2% 수준에서 감소하여 2003년에는 2.3%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1%p 정도 감가상각의 비중이 높지만 그 추세는 중소기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 감소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건비의 경우에는 1990년과 2003년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1990년의 약 4.2%에서 1996년 약 5%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과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하여 4% 초반을 기록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부담이 1990년대에는 1%p까지 차이가 확대되어 갔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감소되어 최근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이

[그림 V-30] 감가상각비(중간값 기준)



[그림 V-31] 인건비(중간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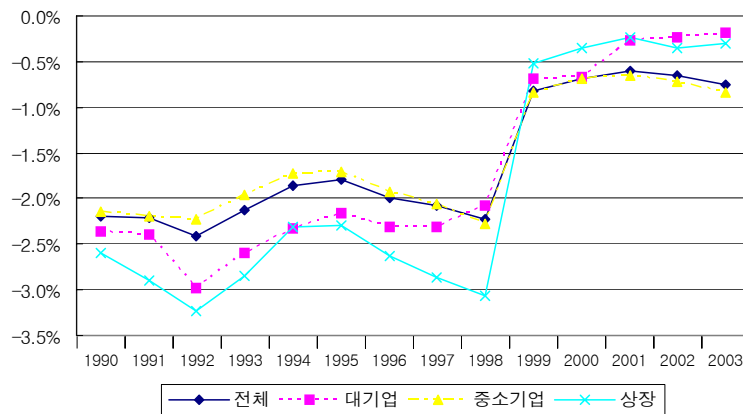
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로 1998년에 인건비 비중이 급속히 낮아졌으나 그 이후에는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는 1990년대 초반보다 다소 높은 상태이다. 예상과는 달리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 영업외수지

영업수지와는 달리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가 1990년대 초반 -2.2% 수준이었고, 그 이후 -1.8%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외환위기 와중에 있던 1998년까지 다시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영업외수지가 급속히 개선되어 최근에는 매출액 대비 -0.7% 수준으로 낮아졌다. 개선의 정도는 상장기업이 가장 두드러진다. 상장기업의 경우 1998년까지 가장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 적자가 컸으나 1999년부

터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대기업은 약 2%p 정도 개선이 있었고 상장기업은 2%p를 상회하는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 개선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영업외수지 개선에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을 살펴본다.

[그림 V-32]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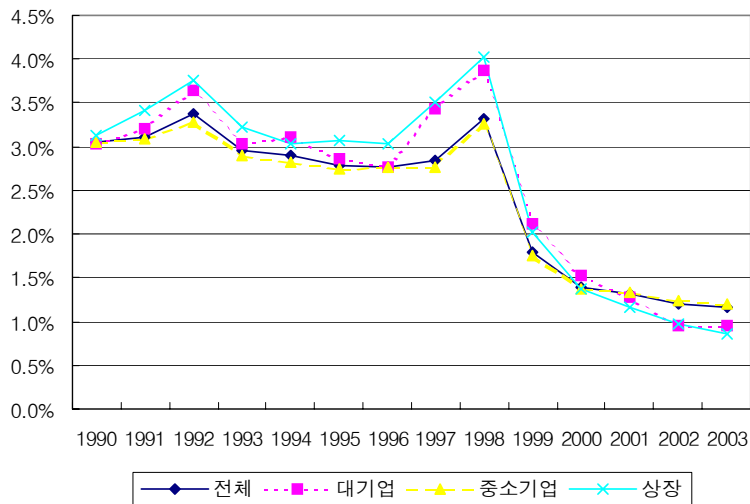


자료에 따르면 이자비용은 기업규모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추세를 보면 1990년 매출액 대비 약 3% 수준에서 1992년 3.4%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1996년까지 감소하여 2.8% 수준이 된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이자율이 상승하며 이자비용도 1998년 3.3%까지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에는 1.2% 수준까지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의 하락은 약 2% 수준으로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에 기인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비해 상장기업 및 대기업의 이자비용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규

모가 큰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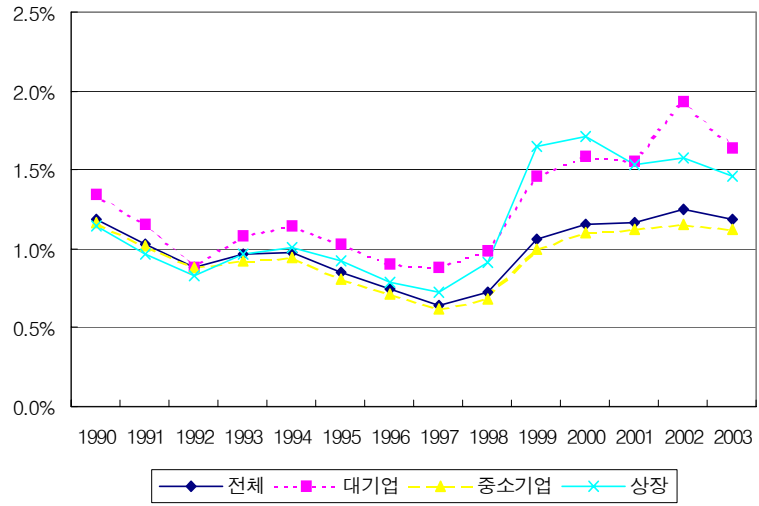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명목세율의 인하로 순이익 대비 법인의 실효세율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순이익의 증가가 주로 영업외수지의 개선의 효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대비로는 법인의 조세부담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V-33] 이자비용(중간값 기준)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을 보면 1997년 이전까지는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상장기업과 대기업은 영업외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순이익이 증가함으로써 매출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근 법인세의 급증은 법인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주로 이자비용 등 영업외수지의 개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34] 매출액 대비 법인세



## VI.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 1. 평균실효세율

#### 가 자료 및 분석 방법

전주성(2004)에서 이미 분석하였듯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담의 변수로 매출총이익 대비 법인세,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등 모두 5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설명변수로는 총자산, 부채비율, 은행거래비율, 감가상각자산, 수출비율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전주성(2004)에서 사용한 것처럼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납부 법인세를 사용한다. 또한 설명변수로 총자산, 부채비율 이외에 매출액과 명목세율, 대기업 더미를 포함시킨다. 매출액은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명목세율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출액과 총자산은 수준변수이므로 각각 자연대수를 취해 모형에 포함시켰다.<sup>18)</sup> 추정방식으로는 OLS모형과 고정효과(Fixed Effects)모형,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을 모두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2월 결산 기준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기간인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존재하는 기업에 대

---

18) 세율과 부채비율, 매출액, 총자산의 규모(scale)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설명변수의 단위를 조절하였다.

해서만 분석을 국한시켰다. 이로 인해 전체 자료에서는 약 13,000여 개의 기업이 존재했으나, 분석기간의 모든 연도에 자료가 존재하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1/10 정도인 1,217개로 축소되었다.

#### 나. 분석 결과

영업이익 대비 유효법인세율의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단,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대기업 터미를 제외), 모든 추정방식에 있어서 계수값의 부호가 일치한다. 세 경우의 추정방식에 따라 명목세율만이 OLS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5% 유의수준에서, 고정효과모형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목세율이 높은 경우 기업의 세부담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음(-)의 추정치를 가지

<표 VI-1> 영업이익 대비 유효법인세율

	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부채비율	-0.0161 (0.1843)	-0.0876	-0.0031 (0.1758)	-0.0176	-0.0068 (0.1739)	-0.0391
명목세율	0.7617** (0.0103)	73.9047	0.3541* (0.1832)	1.9334	0.7589** (0.0179)	42.4288
매출액	-0.0004 (0.0069)	-0.0567	-0.0003 (0.1024)	-0.0027	-0.0006 (0.0119)	-0.0481
총자산	-0.0008 (0.0040)	-0.2048	-0.0002 (0.0651)	-0.0024	-0.0010 (0.0070)	-0.1456
대기업터미	-0.0007 (0.0173)	-0.0417				
R <sup>2</sup>	0.2513		0.0002		0.1636	

주: 1. \*\*, \*: 각각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2. F-값: 3.5900, Hausman Test: 4.9532, P-value=0.2921

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Hausman 검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확률효과모형을 고정효과모형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을 보면 고정효과모형과 OLS모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이익 대비 실효세율의 분석결과를 보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추정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 명목세율만이 여전히 세부담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ausman 검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확률효과모형을 고정효과모형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을 보면 고정효과모형과 OLS모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정효과모형보다

<표 VI-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법인세율

	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부채비율	0.0032 (0.0477)	0.0719	-0.0012 (0.0403)	-0.0290	-0.0004 (0.0400)	-0.0094
명목세율	0.0264** (0.0025)	10.5694	0.1502** (0.0420)	3.5805	0.0280** (0.0051)	5.4705
매출액	-0.0027* (0.0017)	-1.6389	-0.0001 (0.0235)	-0.0054	-0.0026 (0.0034)	-0.7602
총자산	-0.0011 (0.0010)	-1.1494	0.0000 (0.0149)	-0.0002	-0.0010 (0.0020)	-0.4997
대기업터미	-0.0007 (0.0042)	-0.1582				
R <sup>2</sup>	0.0075		0.0008		0.0020	

주: 1. \*\*, \*: 각각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2. F-값: 5.6199, Hausman Test: 8.6703, P-value=0.0699

19)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규정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는 OLS모형과 확률모형이 유의미한 계수값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인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법인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2. 세부담 조정

### 가. 분석 방법

전춘옥 외(1996) 등 법인세 유연화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기업은 세법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변동성을 줄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법인세를 최소화하려는 법인의 노력은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는 조세행정과의 마찰을 유발시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일정 수준으로 법인세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또한 납부세액은 기업의 안정성에 대한 징표가 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세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대출 등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친 세금조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정당국이 목표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고, 제도적으로도 이연법인세제도가 최근에는 도입되었으므로 기업은 세금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이 없으므로 법인세 변동이 적어야 전체적인 법인세액이 축소된다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조정 수단인 직접적인 조세감면과 간접적인 조세감면인 준비금과 평균실효세율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즉, 평소보다 세부담이 높은(낮은) 시점에 직·간접적인 조세감면을 많이(적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감소되므로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이 감면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을 전액 주주에게 배당한다면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과세 형평성을 희생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면의 의미가 상실된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바로 그 금액이 법인세 상당액이 되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세 감면액이 된다(법인세 상당액에는 주민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적립의무가 없으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비과세/준비금을 적용한 경우에도 적립의무가 없다. 적립금의 규모는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에서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이다(기업합리화적립금 = 법인세감면액 -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그러나 2002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되었다.

준비금제도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회계연도의 조세부담은 축소되지만 준비금이 익금으로 산입되는 회계연도의 세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준비금제도는 본질적으로 납세의 시기를 늦추는 것이므로 납세가 연장된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세액을 무이자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납부금액에 이자율을 곱한 만큼의 이득을 주

는 것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하여 법인의 법인세 조정 여부를 살펴본다. 준비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에 자료가 있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다. 법률에 따르면 수입금액의 3%를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기술집약·자본재·소재산업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5%까지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금지되어 있다.

추정모형으로는 앞 절과 동일하게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다. 그리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누적 적립액이므로 증가분을 사용하되 증가분을 적립금 총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준비금은 매년도 준비금 설정 규모가 있으므로 당연도 분을 사용한다. 다만 준비금의 경우 기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이 발생하므로 준비금 총액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수는 있으며, 당연도 준비금의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이용한다. 설명변수로는 법인세차감 전순이익을 이용한 유효평균세율과 법정최고세율,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억원 미만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료는 앞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 나. 분석 결과

먼저 모형을 살펴보면 F-값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OLS모형보다는 두 가지 패널모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Hausman Test의 수치는 양 모형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우선 우리의 관심 대상인 평균실효세율에 대한 계수를 보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직접적인

조세감면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의 증감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억원 미만에 대한 계수는 확률효과모형에서만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억원 미만에 대한 계수가 음(-)인 것은 순이익이 작을 때 조세감면의 활용을 적게 하는 반면 순이익이 많을 때 조세감면을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높은 세율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조세감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목세율은 양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음(-)의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명목세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이 조세감면을 활용하는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배치되지만 법정 최고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시간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조세감면이 증가하는 반면 명목세율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각종 직접적인 조세감면을 활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먼저 모형을 살펴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경우와는 달리 F-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고, Hausman Test의 수치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 가지 모형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본다.

평균실효세율에 대한 계수를 보면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간접적인 조세감면 제도인 기술개발준비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억원 미만에 대한 계수도 유의하지 않으므로 간접감면을 통한 법인의 세부담 조정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명목세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음(-)의 수치로 나타났으며, 그 해석은 앞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통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lt;표 VI-3&gt; 기업합리화적립금

	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명목세율	-0.7001** (0.0387)	-18.069 3	-0.3814** (0.0238)	-16.028 8	-0.4066** (0.0229)	-17.741 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법인세율	-0.2009** (0.0684)	-2.9375	0.0028 (0.0045)	0.6237	0.0028 (0.0045)	0.628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억 미만	-0.0026 (0.0018)	-1.4545	-0.0009 (0.0021)	-0.4154	-0.0040* (0.0018)	-2.1968
R <sup>2</sup>	0.0689		0.0160		0.0896	

주: 1. \*\*, \*: 각각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2. F-값: 4370.04, Hausman Test: 10.8755, P-value=0.0124

&lt;표 VI-4&gt; 기술개발준비금

	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계수값 (표준편차)	t 값
명목세율	-0.0270** (0.0082)	-3.2855	-3.8243** (0.0831)	-45.999 3	-0.0416** (0.0091)	-4.544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법인세율	-0.0078 (0.0145)	-0.5368	0.0200 (0.0157)	1.2723	-0.0014 (0.0141)	-0.100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억 미만	-0.0001 (0.0004)	-0.1461	-0.0087 (0.0073)	-1.1953	0.0005 (0.0004)	1.1927
R <sup>2</sup>	0.0023		0.1180		0.0023	

주: 1. \*\*, \*: 각각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2. F-값: 3.166, Hausman Test: 2100.4720, P-value=0.0000

## VII. 요약 및 시사점

최근 글로벌화와 조세경쟁이 일반화되면서 법인과 관련된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또는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명목세율, 조세부담률, 실효세율(평균,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우리나라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외국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법인의 소득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세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큰 원인은 세무조정이나 손실공제 이연기간, 각종 조세감면 등이 외국법인에 비해 불리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정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시자료를 사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할 때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자료 외에 개별 법인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의 평균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였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세청 자료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융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재무자료는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포함되는 범위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이며 사용연도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조업 등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 즉 경제적 이익의 기준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세액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법인세 등에 대한 자료와 1999년부터 사용된 법인세비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세액에는 법인세 이외에 주민세 등도 포함된다.

전체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업별 평균세율(세금/소득)에 외형 구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조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91년의 약 22% 수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지속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약간 증가하여 2003년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1년의 약 17% 수준에서 1995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약 18% 수준이었다.

기업규모별로 조세부담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기업의 평균세율의 중간값 및 평균 자료를 사용하였고, 비중 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기업은 제외된 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계산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및 중간값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기업 모두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약 2%p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 1996년까지는 3%p 또는 그 이상이었고, 이후 2000년에 6%p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5%p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율 격차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의 영향도 있지만 이중 세율구조로 인하여 대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 실효세율의 계산의 경우 산업별 비중 조정은 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자료를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5~28%의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내의 업종간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중반에는 1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약 4~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G7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점별로 5~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세차감전순이

익 대비 평균실효세율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7 국가의 경우에, 영업이익 기준하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평균유효법인세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순이익 기준하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감가상각비가 다소 하락한 반면 인건비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지와는 달리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가 1990년대 초반 -2.2%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출액 대비 -0.7%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상장기업의 영업외수지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이자비용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의 하락은 약 2% 수준으로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을 보면 1997년 이전까지는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영업이익 대비 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자산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 등은 세부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대비

실효세율의 분석결과에서는 세부담이 기업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세법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변동성을 줄이려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술개발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모두 OLS와 Fixed Effects모형에서 실효세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억원 미만 더미에 대한 계수는 강한 음수로 나타나고 있어 세율이 높아 세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많이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조정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참 고 문 헌

- 고종권, 『조세부담의 측정치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1997, pp. 51~82.
- 곽태원,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감가상각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85-05, 한국조세연구원, 1985.9.
- 권순철·권순창,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세무학연구』 제5호, 한국세무학회, 1993, pp. 73~93.
- 김준영, 『한국의 자본코스트와 법인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1. 9.
- 김진수·박형수·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03-05,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현숙,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제98호, 한국조세연구원, 2004. 8.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노현섭·김확열·장석오, 「한계세율 측정방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 『재정논집』, 제17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2, pp.109~137.
- 노현섭·서갑수·서종길, 「한계세율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재정연구』, 제10권 제2호, 2004. 8.
- 박기백·이명현,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전환 효과』, 연구보고서 00-03, 한국조세연구원, 2000.
- 박한순, 『세전이익, 법인세 차이 및 유효세율의 관계』, 『경영학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00, 87~108면.

- 오원선·유성용·김진환, 「법인세율 및 자본비용의 변화가 기업규모별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25집 제2호, 2003년 6월, pp. 76~101.
- 유시권·이노창·유재권·오엽록,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97-09, 한국조세연구원, 1997. 8.
- 윤건영, 「자본소득세정책의 투자유인효과분석」, 『재정논집』, 제2집, 한국재정학회, 1988. 3.
- 윤종인, 「유효한계세율의 추이와 변동요인: 1983-1995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논집』, 제12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0. 8.
- 이세용·이창우,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20권 제1호, 2003.
- 이윤재·김경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한국기업을 중심으로 1986~1997」,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4년 6월 19일, pp. 111~128.
- 이준규·이태희,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7. 3.
- 이준규, 「한계법인세율의 추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0호, 1997. 8.
- 전주성, 「기업특성과 세부담: 대안적 평균유효세율 측정치의 비교」, 『공공경제』 제9권 제1호, 2004, pp. 147~175.
- 전춘옥·조현연·백승산, 「법인세 유연화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1996, pp. 63~95.
- 정연해·노현섭·정무준, 「결손금을 고려한 한계법인세율의 추정」, 『재정논집』, 제17집 제2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2.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4. 9.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통계자료집』, 1997, 및 보도자료.

- Ahmed, S., "Modelling Corporate Tax Liabilities Using Company Accounts," CWPE 04012, January 2004.
- Altshuler, R. and Alan J. Auerbach, "The Significance of Tax Law Asymmetri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5, 1990, pp. 61~86.
- Auerbach, A. J., "Tax Policy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47, 1992, pp. 141~170.
- Auerbach, A. J., "Taxation and Corporate Financial Policy," NBER WP 8203, 2001.
- Bradford, D. B. and C. Stuart, "Issues in the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of Effective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Vol. 39, September 1986, pp. 307~316.
- Citizens for Tax Justice, *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Free Loaders*, Robert McIntyre, ed. Arlington, VA: Tax Analysts, 1985.
- Dworin, L., "On estimating corporate tax liabilities from financial statements," *Tax Notes*, (December 2), 1985, pp. 965~71.
- Feldstein M., "Inflation, Tax Rules and Investment: Some Econometric Evidence," *Econometrica*, Vol. 50, 1982, pp. 825~862
- Feldstein, M. and Lawrence H. Summers,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e sector, *National Tax Journal*, Vol. 32, 1979, pp. 445~470.
- Feldstein, M. and James Poterba and Louis Dicks-Mireaux, "The effective tax rate and the pretax rate of return",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1, 1983, pp. 129~158.
- Fullerton, D., "Which Effective Tax Rate?", Working paper No. 1123,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83.
- Fullerton, D., "Which Effective Tax Rate?," *National Tax Journal*, Vol. 37, March 1984, pp. 23~41.
- Goolsbee, Austan, "The Impa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Evidence from State Organizational form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8, 2004, pp. 2283~2299.
- Gordon, K. and Harry Tchilinguirian,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on Physical," Human and R&D Capital, OECD, ECO/WKP(98)12, 1998.
- Gordon, R. H. and Young Lee, "Do Taxes Affect Corporate Debt Policy? Evidence from U.S. Corporate Tax Return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2, 2001, pp. 195~224.
- Graham, J. R. "Debt and the Marginal Tax Rat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41, 1995, pp. 41~73.
- \_\_\_\_\_, "Proxies for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42, 1996, pp. 187~221.
- Gupta, S., and K. Newberry,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Vol. 16, 1997, pp. 1~34.
- Gupta, S. and Lillian F. Mills, "Corporate Multistate Tax Planning: Benefits of Multiple Jurisdic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3, 2002, pp. 117~139.
- Hall, R. E. and D. W.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June 1967, pp. 391~414.
-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연도.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tudy of 1983 *Effective Tax Rates of Selected Large U.S. Corporation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Jorgenson, D.W. and M.A., Sullivan,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 in C.R. Hulten (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Washington: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pp. 171~238.
- King, M.A. and D.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e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othari, S.P. “Capital Markets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1, 2001, pp. 105~231.
- Lambert, R. A., “Contracting Theory and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2, 2001, pp. 3~87.
- Lee, Charles M. C., “Market Efficiency and Accounting Research: A Discussion of ‘Capital Market Research in Accounting’ by S.P. Kothari,”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1, 2001, pp. 233~253.
- Magee, Robert P., “Discussion of Contracting Theory and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2, 2001, pp. 89~96.
- Manzon, G., “The role of taxes in early debt retirement,”

-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1), 1994, pp. 87~100.
- Mckee, M. J., J. J. C. Visser and P. G. Saunders, "Marginal Tax Rates on the Use of Labour and Capital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7, 1986, pp. 45~152.
- Mendoza, E. G., A. Razin and L. L. Tesar, "Effective Tax Rates in Macroeconomics: Cross-Country Estimates of Tax Rates on Factor Incomes and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 4864, September 1994.
- Mills, Lillian F., "Book-Tax Differences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6, 1998, pp. 343~356.
- OECD, "A Critical Survey, OECD Tax Policy Studies," Effective Tax Rates, No.5, 2000.
- \_\_\_\_\_, "A Note on The Interpretation of Tax/GDP Ratios,"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1999.
- \_\_\_\_\_, *Average Effective Tax Rates on Capital, Labour and Consumption*, 2000.
- \_\_\_\_\_, "Effective Tax Rates: First Quantitative Results,"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1999.
- \_\_\_\_\_,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4
- \_\_\_\_\_, "On The Use of Micro-Data to Assess Average Tax Rates,"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1999.
- \_\_\_\_\_,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 \_\_\_\_\_, "Tax Burdens-Alternative Measur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2, 2000.
- \_\_\_\_\_,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Paris, 1991.
- Omer, T. C., K. H. Molloy and D. A. Ziebart,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3, 1991, pp. 57~72.
- Plesko, George A.,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measures of corporate tax r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5, 2003, pp. 201~226.
- Porcano, T. M., "Corporate tax rates: Pro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7(Spring), 1986, pp. 17~31
- Scholes, M., Wolfson, M.,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Prentice-Hall, Inc., Engelwood Cliffs. NJ. 1992.
- Scholes, Myron S. and Mark A. Wolfso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1992.
- Shackelford, Douglas A. and Terry Shevlin, "Empirical tax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1, 2001, pp. 321~387.
- Shevlin, T., "Estimating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with asymmetric tax treatment of gains and loss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1(1), 1990, pp. 51~67.
- \_\_\_\_\_, "Taxes and off-balance-sheet finan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limited partnerships," *Accounting Review*

- 52(3), 1987, pp. 480~509.
- Spooner, G. M.,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s," *National Tax Journal*, 39(September), 1986, pp. 293~306.
- Stickney, C. P., and V. E. McGe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Winter), 1982, pp. 125~152.
- Summers, "Taxation, Subsidy and Corporate Investment: A q-Theory Approa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81, pp. 67~140.
- Volkerink, B. and Bakob de Haan, "Tax Rations: A Critical Survey," *DAFFE/CFA/WP2(99)4*, April 1999.
- Zimmerman, J. 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August), 1983, pp. 119~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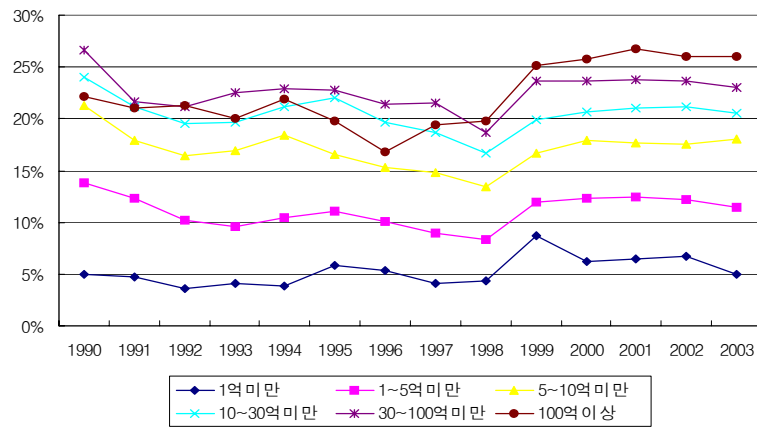
## <부록 1> 업태, 외형 기준 법인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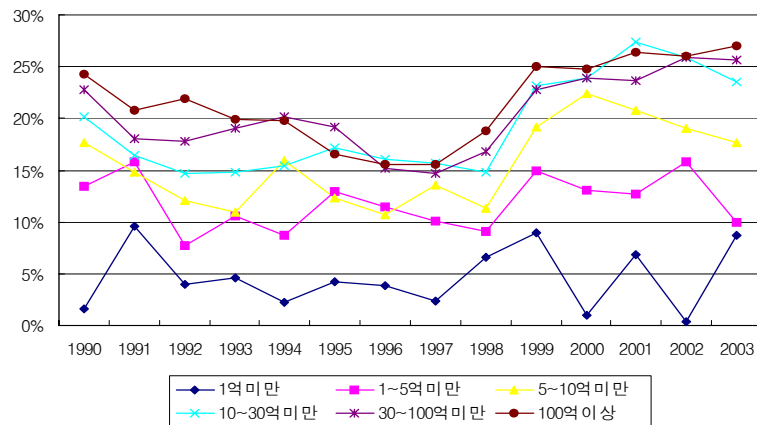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광업/ 제조업/ 전기 등	5억원 미만	17.66	16.56	16.22	15.33	14.71	15.11	14.40	14.16	14.71	16.92	15.93	15.32
	5억~30억원	10.68	10.30	10.98	11.11	10.93	10.29	10.10	10.30	9.96	8.50	8.02	8.24
	30억~100억원	3.74	3.48	3.70	3.83	3.91	3.73	3.72	3.42	3.37	2.89	2.75	2.78
	100억원 이상	1.58	1.52	1.57	1.56	1.67	1.53	1.53	1.50	1.45	1.25	1.18	1.17
건설업	5억원 미만	9.40	10.63	9.74	9.83	9.73	10.09	9.85	9.45	9.78	11.07	11.39	11.12
	5억~30억원	5.68	6.61	6.59	7.12	7.23	6.87	6.90	6.88	6.62	5.56	5.74	5.98
	30억~100억원	1.99	2.23	2.22	2.46	2.59	2.49	2.54	2.28	2.24	1.89	1.97	2.02
	100억원 이상	0.84	0.98	0.94	1.00	1.10	1.02	1.04	1.00	0.96	0.82	0.84	0.85
도매업/ 소매업	5억원 미만	11.54	12.08	12.40	12.26	12.53	12.73	12.99	12.84	12.67	12.48	11.95	12.51
	5억~30억원	6.98	7.30	7.50	7.41	7.58	7.70	7.85	7.76	7.66	7.55	7.22	7.56
	30억~100억원	2.44	2.56	2.62	2.59	2.65	2.69	2.75	2.72	2.68	2.64	2.53	2.65
	100억원 이상	1.03	1.08	1.11	1.10	1.12	1.14	1.16	1.15	1.13	1.12	1.07	1.12
음식·숙 박업/운수 /부동산/ 서비스업	5억원 미만	12.75	11.94	11.70	11.49	11.26	11.46	11.70	12.21	12.08	13.04	14.03	13.91
	5억~30억원	7.71	7.22	7.08	6.94	6.81	6.93	7.08	7.38	7.30	7.88	8.48	8.41
	30억~100억원	2.70	2.53	2.48	2.43	2.38	2.43	2.48	2.58	2.56	2.76	2.97	2.94
	100억원 이상	1.14	1.07	1.05	1.03	1.01	1.03	1.05	1.09	1.08	1.17	1.26	1.24
어업/ 산림업 /축산업	5억원 미만	0.27	0.22	0.21	0.24	0.30	0.27	0.27	0.27	0.31	0.26	0.49	0.48
	5억~30억원	0.16	0.13	0.13	0.14	0.18	0.16	0.16	0.17	0.19	0.16	0.30	0.29
	30억~100억원	0.06	0.05	0.05	0.05	0.06	0.06	0.06	0.06	0.06	0.06	0.10	0.10
	100억원 이상	0.02	0.02	0.02	0.02	0.03	0.02	0.02	0.02	0.03	0.02	0.04	0.04
의료업 /기타산업	5억원 미만	0.87	0.80	0.89	1.08	1.15	1.18	1.23	1.44	1.66	1.02	0.91	0.67
	5억~30억원	0.53	0.48	0.54	0.65	0.70	0.71	0.74	0.87	1.01	0.62	0.55	0.40
	30억~100억원	0.18	0.17	0.19	0.23	0.24	0.25	0.26	0.30	0.35	0.22	0.19	0.14
	100억원 이상	0.08	0.07	0.08	0.10	0.10	0.11	0.11	0.13	0.15	0.09	0.08	0.06

## <부록 2> 영업이익 기준 소득별 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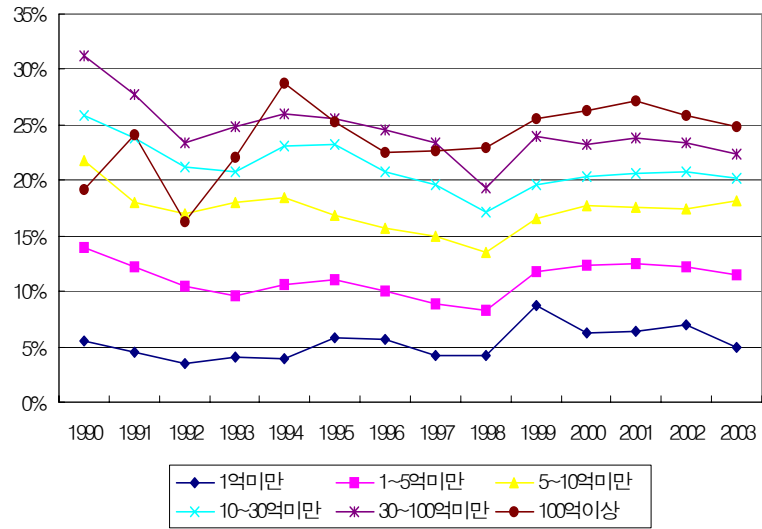
[부도 2-1] 소득별 법인세율(전체-영업이익, 중간값)



[부도 2-2] 소득별 법인세율(대기업-영업이익,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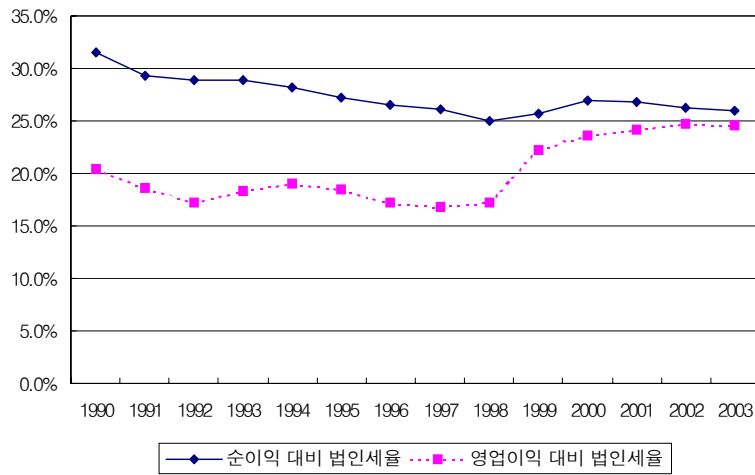


[부도 2-3] 소득별 법인세율(중소기업-영업이익,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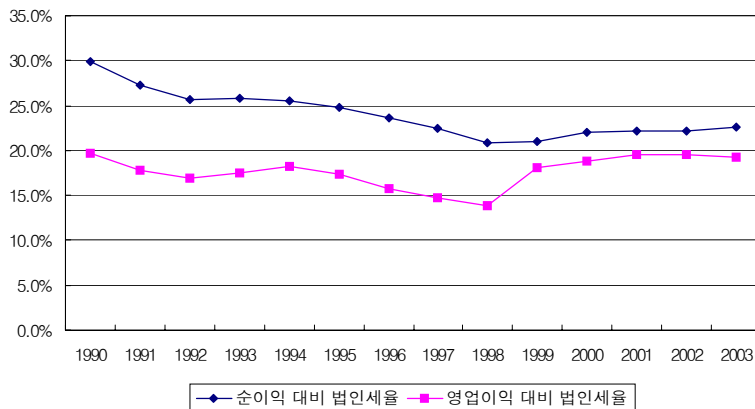
### <부록 3> 전체기업(금융업포함)의 법인세율 평균값 추이

[부도 3-1] 전체기업의 법인세율 추이(대기업-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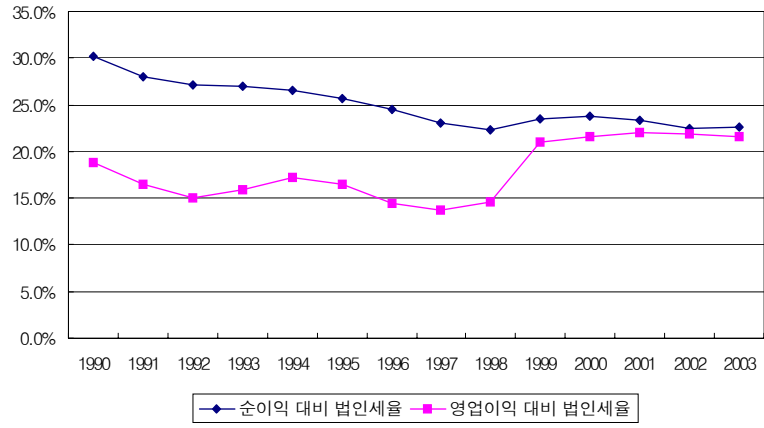


[부도 3-2] 전체기업의 법인세율 추이(중소기업-평균값)

법인세율 추이-중소기업(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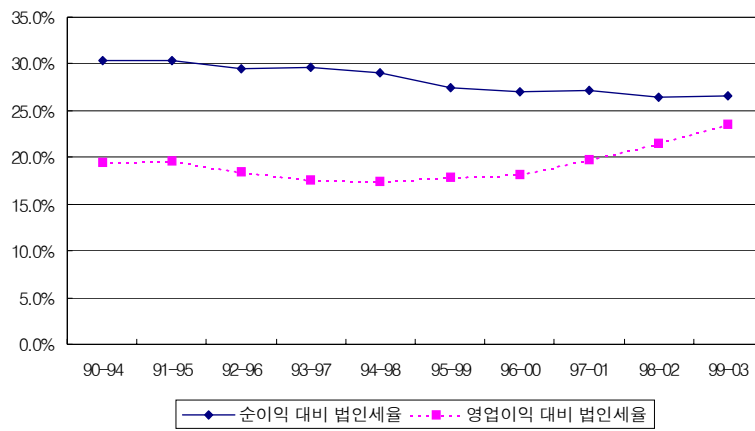


[부도 3-3] 전체기업의 법인세율 추이(상장기업-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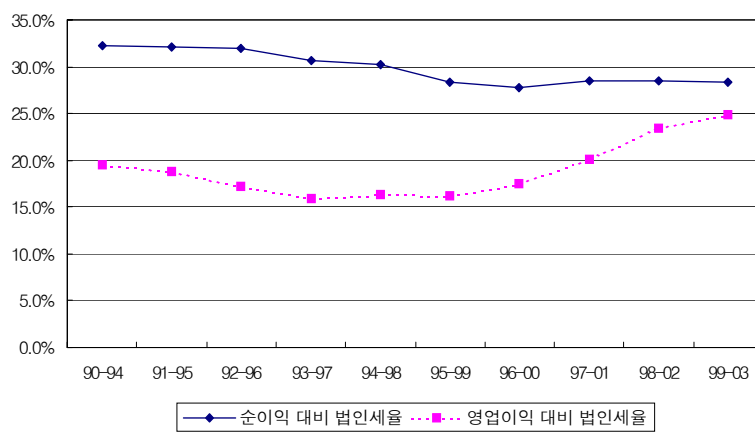


### <부록 4> 법인세율 5년 평균의 중간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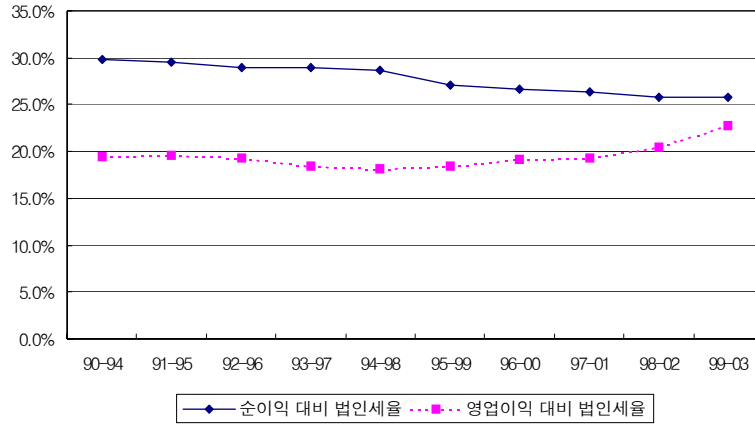
[부도 4-1] 법인세율의 5년평균 추이(전체-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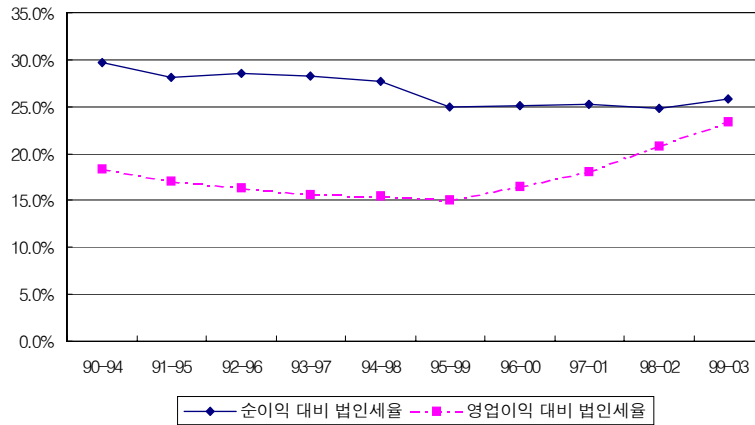
[부도 4-2] 법인세율의 5년평균 추이(대기업-중간값)



[부도 4-3] 법인세율의 5년평균 추이(중소기업-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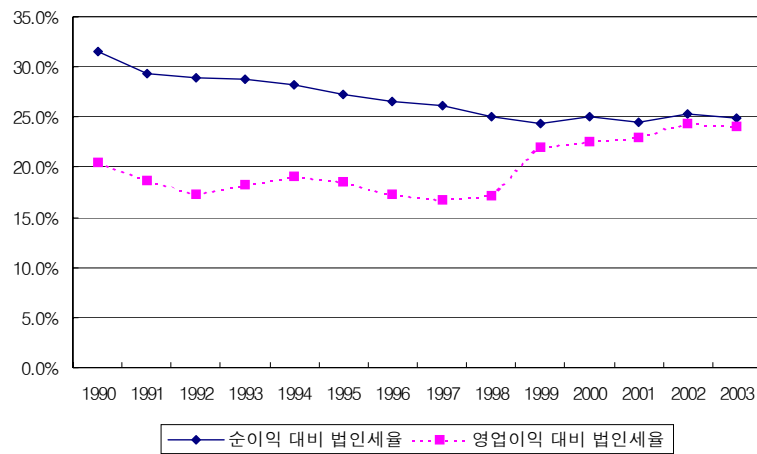


[부도 4-4] 법인세율의 5년평균 추이(상장기업-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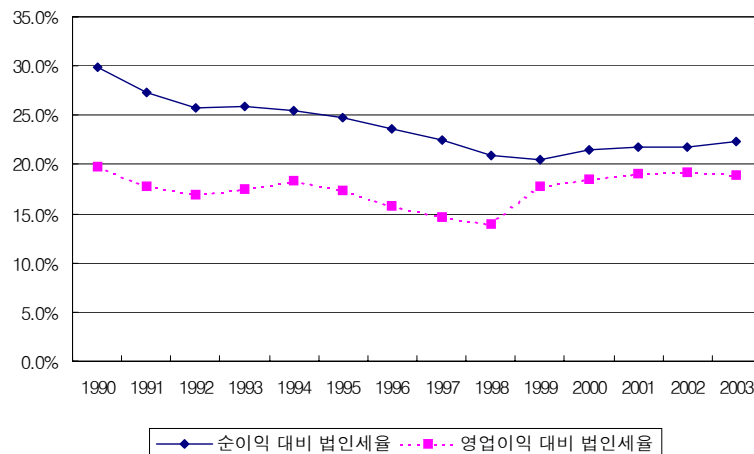


## <부록 5> 납부액 기준 법인세율의 기업 규모별 추이(평균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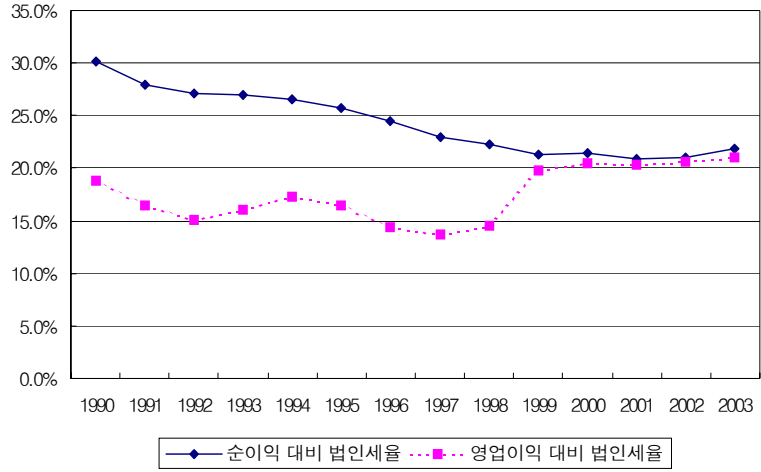
[부도 5-1]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대기업-평균값)



[부도 5-2]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중소기업-평균값)



[부도 5-3] 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추이(상장-평균값)



## <부록 6> 산업별, 업종별 법인세 부담 추이

<부표 6-1> 업종별 법인세 부담 추이(중간값 기준, 제조업종)

(단위: %)

업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음·식료품	순이익	33.9	28.0	24.4	25.8	27.5	27.6	25.5	24.7	21.6	22.0	24.6	23.3	22.4	22.8
	영업이익	12.5	12.8	11.5	12.0	13.6	12.0	11.5	9.2	10.1	15.3	17.3	17.2	19.2	19.8
담배	순이익	-	-	-	26.0	29.8	-	30.3	28.3	23.0	-	32.7	23.1	26.8	14.1
	영업이익	-	-	-	40.4	43.7	-	44.7	41.6	36.1	-	30.0	21.3	25.8	13.2
섬유제품	순이익	27.5	26.9	24.5	23.2	23.2	23.2	21.2	22.2	19.9	17.1	20.3	20.7	20.3	20.5
	영업이익	12.3	11.7	10.7	10.4	12.8	12.7	9.3	7.9	10.8	13.6	13.5	15.2	14.6	14.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순이익	37.0	33.9	29.3	29.3	30.3	28.8	28.9	26.3	23.1	25.5	25.9	26.7	27.7	26.8
	영업이익	24.8	21.8	16.9	20.1	23.2	20.7	17.7	15.7	12.6	21.1	21.6	22.5	23.5	22.5
가죽, 가방 및 신발	순이익	31.1	29.1	21.8	24.5	28.1	26.2	29.3	20.0	19.0	21.5	27.4	23.5	24.8	23.1
	영업이익	18.1	14.9	13.7	16.9	18.8	17.8	14.9	11.4	8.9	16.8	18.1	18.7	22.5	19.0
목재 및 나무제품	순이익	23.2	23.6	25.9	19.2	19.7	28.3	19.9	23.4	17.6	17.9	17.3	18.1	19.4	21.8
	영업이익	15.4	12.3	9.7	10.0	22.8	17.4	6.9	6.1	7.0	13.6	14.4	10.9	17.1	21.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순이익	29.1	29.0	23.4	23.5	24.5	26.3	20.8	23.5	17.9	19.8	19.2	20.3	21.5	21.7
	영업이익	13.3	12.4	10.9	11.3	15.7	14.0	8.8	8.2	10.1	13.2	14.7	15.3	16.4	15.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순이익	34.1	32.8	32.2	28.0	31.1	27.8	28.1	25.1	24.6	22.7	22.9	24.4	24.1	24.8
	영업이익	24.4	21.9	18.1	16.1	18.8	22.4	19.6	17.1	14.9	18.4	19.8	22.7	22.6	21.9
코크스, 석유정 제품 및 핵연료	순이익	32.8	33.0	28.3	26.5	32.0	23.3	24.1	18.3	24.5	22.8	23.7	23.0	21.9	26.9
	영업이익	17.9	12.5	14.0	16.0	19.4	16.1	12.4	3.8	12.0	14.5	19.1	18.2	22.7	27.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순이익	33.3	28.5	26.6	27.1	26.0	27.0	25.8	22.3	21.8	20.5	21.7	22.0	22.6	22.6
	영업이익	19.3	14.4	12.0	12.6	13.2	13.8	12.9	9.9	10.8	15.6	17.7	18.7	19.9	19.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순이익	30.0	24.7	22.8	23.4	19.3	21.5	21.2	17.9	17.8	20.2	19.3	21.0	19.8	21.2
	영업이익	15.9	14.5	15.0	11.2	15.8	12.7	14.2	9.5	8.5	15.1	13.9	16.7	17.1	16.7
비금속광물제품	순이익	34.2	30.6	27.6	28.2	27.9	26.6	25.7	26.3	21.9	18.1	19.6	20.4	21.5	22.3
	영업이익	20.0	20.0	17.5	18.0	17.2	14.6	14.3	12.3	10.9	12.7	14.0	16.4	17.0	18.3
제 1차 금속 산업	순이익	27.2	25.2	23.1	25.4	24.5	22.8	23.8	23.8	20.2	19.1	19.0	19.5	19.6	20.3
	영업이익	15.4	11.1	9.0	11.2	14.2	13.1	10.1	9.2	9.3	14.3	12.6	13.0	15.0	14.0
조립금속제품	순이익	32.3	25.3	23.7	25.4	25.0	27.6	24.2	22.6	19.3	18.4	20.8	20.8	20.8	22.0
	영업이익	16.2	14.3	13.3	16.1	15.5	15.4	14.2	13.3	10.1	13.8	15.9	17.5	17.2	18.5

## &lt;부표 6-1&gt;의 계속

(단위: %)

업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기타 기계 및 장비	순이익	29.0	26.0	23.2	23.0	24.5	23.4	23.0	20.1	19.5	20.1	19.2	19.8	20.0	19.4
	영업이익	16.9	14.1	11.5	13.1	14.4	13.2	12.2	10.6	9.8	15.8	16.4	17.3	17.1	15.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순이익	33.9	30.9	20.9	22.8	19.5	21.3	19.8	22.1	17.6	16.9	16.7	17.9	19.6	18.0
	영업이익	26.4	9.9	12.4	11.8	11.0	10.8	10.7	8.2	11.4	16.1	15.0	15.1	17.7	14.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순이익	28.3	22.1	23.3	23.3	22.3	22.0	20.2	20.0	18.8	17.7	20.3	20.5	19.9	21.2
	영업이익	16.4	13.9	13.2	13.3	14.6	13.3	12.4	10.1	10.9	14.2	17.6	17.9	17.1	17.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순이익	23.9	23.0	22.6	22.8	20.3	19.9	20.5	18.3	17.6	16.1	16.8	17.6	17.8	17.7
	영업이익	13.2	13.0	11.5	11.7	13.0	13.0	11.8	10.6	10.4	14.7	15.4	16.3	15.5	14.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순이익	34.9	27.1	22.1	20.5	22.8	24.9	21.1	19.3	19.0	17.6	19.5	19.3	18.9	24.1
	영업이익	21.0	17.6	13.3	15.0	12.4	14.7	11.2	8.9	10.0	15.2	17.8	18.4	15.4	16.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순이익	28.2	21.8	22.8	20.2	21.4	20.6	20.4	20.8	18.6	18.6	19.1	18.7	18.5	18.4
	영업이익	14.0	11.6	9.8	9.8	12.5	12.3	10.8	10.3	7.4	13.1	14.0	15.3	16.4	15.7
기타 운송장비	순이익	22.5	27.7	23.8	25.0	28.4	20.6	20.5	20.7	22.5	21.5	19.5	19.0	19.7	18.8
	영업이익	8.7	12.5	13.4	12.8	19.6	14.3	13.0	10.6	10.9	14.2	15.8	15.0	15.8	14.8
가구 및 기타 제품	순이익	32.2	28.2	21.8	24.0	24.5	26.4	21.7	21.1	19.6	19.3	22.6	21.9	23.4	24.0
	영업이익	17.2	15.3	12.5	16.1	11.4	15.3	10.6	12.6	11.5	15.6	18.5	21.5	19.9	21.0
재생활용 가공원료	순이익	24.1	29.9	21.9	22.2	15.1	14.4	27.7	30.9	25.0	23.6	23.7	24.6	19.0	21.2
	영업이익	11.2	20.1	20.7	16.5	11.4	5.3	7.6	11.4	12.3	13.1	14.2	9.2	9.6	14.3

## &lt;부표 6-2&gt; 산업별 법인세 부담 추이(중간값 기준)

(단위: %)

업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업·임업	순이익	36.6	25.0	13.9	25.5	32.8	39.6	35.5	37.8	22.4	26.8	23.9	17.3	20.2	19.4
	영업이익	18.4	16.7	10.0	13.5	15.5	17.8	11.3	9.9	7.8	23.3	19.8	20.2	16.2	18.6
어업	순이익	39.7	32.6	25.5	34.3	29.8	27.5	30.4	32.2	18.7	25.0	28.4	25.6	21.5	22.5
	영업이익	20.0	11.4	9.2	15.4	19.3	16.5	20.3	24.1	12.0	19.4	18.9	14.7	11.0	16.0
광업	순이익	31.3	19.2	24.5	16.6	30.2	19.8	21.3	26.6	22.8	23.8	23.6	26.0	28.1	22.7
	영업이익	15.2	10.8	18.1	17.8	23.2	5.0	11.6	9.3	11.2	17.4	16.7	17.2	21.0	19.6
제조업	순이익	30.9	26.9	24.5	24.3	24.7	23.7	23.3	21.6	19.8	19.1	20.0	20.7	20.7	21.0
	영업이익	16.6	14.1	12.4	12.8	14.5	13.5	12.2	10.5	10.2	14.8	16.0	17.1	17.2	16.8
전기·가스등	순이익	35.8	36.4	34.6	39.6	38.9	33.9	32.2	29.9	30.8	29.5	30.2	28.9	29.1	28.0
	영업이익	27.6	26.5	19.0	20.9	28.3	25.9	22.5	20.1	28.9	22.0	23.9	21.2	24.3	24.5
건설업	순이익	33.1	31.4	30.2	32.8	30.9	30.1	27.5	27.5	25.2	23.8	25.2	23.6	23.1	23.9
	영업이익	23.8	19.8	20.1	21.0	18.0	18.5	16.0	16.1	14.2	19.0	18.8	19.1	19.5	19.7
도소매업	순이익	37.3	34.0	33.3	32.1	31.9	29.8	27.6	26.2	24.8	27.5	28.0	28.3	28.6	28.5
	영업이익	25.8	23.3	18.7	21.6	21.8	20.9	16.9	15.1	15.3	25.0	25.3	25.1	26.0	24.7
숙박·음식	순이익	34.7	34.1	34.4	33.2	31.6	26.9	29.0	29.3	28.9	28.2	30.4	29.8	27.5	27.6
	영업이익	17.1	23.6	26.4	24.5	24.9	22.3	21.1	26.4	22.9	23.1	23.9	25.6	24.5	22.1
운수업	순이익	38.8	35.9	33.1	34.2	32.3	29.2	28.2	26.8	24.4	27.5	26.0	26.6	26.4	25.4
	영업이익	27.9	22.1	23.3	16.6	22.4	21.1	19.4	13.8	14.4	22.4	22.2	24.1	22.6	21.5
통신업	순이익	35.7	17.1	35.8	32.5	31.5	33.7	32.6	27.2	29.2	23.7	20.0	27.3	17.9	23.9
	영업이익	33.4	25.2	24.8	34.7	36.8	33.5	28.9	22.7	15.9	17.5	15.3	25.5	17.7	21.7
금융·보험	순이익	38.5	36.4	42.2	39.4	44.4	31.4	31.4	24.5	39.0	37.5	23.4	30.9	29.6	31.1
	영업이익	37.2	43.6	46.7	32.2	36.8	40.8	29.0	24.6	20.0	30.7	24.2	29.3	33.2	28.0
부동산·임대	순이익	34.8	35.6	33.9	33.1	32.8	30.8	27.6	29.3	26.4	26.3	27.4	26.1	25.7	27.4
	영업이익	27.5	20.4	26.3	24.0	26.7	26.1	19.9	22.0	17.6	21.8	25.5	22.3	23.5	21.9
사업서비스	순이익	37.6	31.7	33.2	32.3	29.7	23.0	23.6	18.0	18.6	18.2	18.3	18.7	20.1	23.1
	영업이익	23.5	19.8	19.4	19.8	18.4	17.5	15.6	12.1	13.2	17.7	18.9	18.7	19.0	20.4
교육서비스	순이익	34.9	32.6	39.3	27.6	34.4	34.1	31.0	30.6	27.3	30.5	30.1	30.5	29.9	29.4
	영업이익	34.4	31.4	29.6	21.3	32.3	28.5	33.5	25.8	18.9	28.6	29.1	29.5	29.9	29.3
보건복지	순이익													9.0	29.4
	영업이익													8.9	27.4
오락·문화등	순이익	35.7	33.6	35.9	35.9	33.6	33.0	30.4	30.4	25.2	25.0	27.1	25.5	26.0	25.4
	영업이익	28.7	31.7	24.2	30.9	36.7	26.6	33.9	28.9	17.5	25.5	25.0	24.9	24.0	23.7
공공·개인	순이익	27.6	27.2	29.0	23.0	23.3	21.7	22.4	20.0	27.4	22.1	26.0	28.3	22.3	23.4
	영업이익	14.6	19.9	9.3	10.0	14.8	12.6	12.5	9.6	16.5	14.7	18.0	18.2	16.8	18.7

## 법인세 부담 연구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박기백 · 김 진

본 연구는 개별 법인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의 평균적인 법인세 부담을 측정하였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측정하였는데, 소득으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고 세액으로는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약 2%p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 1996년까지는 3%p 또는 그 이상이었고, 이후 2000년에 6%p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5%p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율 격차는 이중 세율구조로 인하여 대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별 실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감가상각과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을 살펴볼 때 감가상각비가 다소 하락한 반면 인건비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Corporate Tax Burdens

Ki-Baeg Park, Jin Kim

This report examines the corporate tax burdens of the Korean business sectors by calculating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with individual firms' financial data sets. As a micro-data analysis, it uses Income Before Income Taxes (IBIT), the 5-year average of IBIT, or Operating Income, respectively, for an income proxy, and Income Taxes for a tax proxy.

We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between the large and the small companies. That difference is increased from 2%p in early 1990s to 6%p in 2000. However, it recently decreases to 5%p or less. The reason would be the current two-tier tax rate system and the increase of tax credits for the small companies. Especially, the difference among the industries reveals that the tax burde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lower than the other sectors. We think the reason would be the large degree of tax credits to that industr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affects the firms' operating income, we report that the ratio of Depreciation Over Sales increases while the ratio of Personnel Expenses Over Sales remains. Furthermore, we find that the enhancement of Non-operating Bal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is mainly due to the falling burden of Interest Expenses.

<著者略歴>

朴 寄 白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金 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대학원 졸업  
미국 Minnesota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4-08

법인세 부담 연구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박기백·김진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팩시밀리: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의 2004

ISBN 89-8101-282-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